

모니터링 리포트 Vol. 49

〈표지와 같은 면지〉

발행인 이권희
 편집인 김용구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1303호 (우)07255
 Tel 02) 833-3097
 Fax 02) 833-3039
 홈페이지 www.ableinfo.co.kr
 이메일 ablecenter@hanmail.net
 디자인 경성문화사

CONTENTS

편집자 편지

김용구 소장

포커스

2023년 2분기 국회 의정 모니터링 수행

손영수 | 선임연구원 8

언론 및 방송이 집중 보도한 '장애인의 날'

한지윤 | 주임연구원 24

2023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 분석

고영란 | 연구원 30

이슈포착

탈시설에서 자립생활전환으로

진형식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44

UNCPRD 탈시설 가이드라인 분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편집부 4+

영화평

양림동 소녀

임영희, 오재형 감독 66

• 편집자 편지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 해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 심의 후 공개한 최종견해에는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차별 유형(multiple and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이란 용어가 여섯 차례 등장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양상이 복합적이고 다중적이면서 연속적으로 교차하는 모양을 띠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장애인은 장애뿐만 아니라 소녀 또는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선천성면역결핍증(HIV) 감염자, 노인, 아동, 인종, 기타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도 차별을 받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최종견해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 한국 정부에 권고한 것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 법령과 전략이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차별 피해자 구제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시행해 오고 있는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에 지원하는 분들의 이력서를 보면 대부분 ‘취업 낭인’들입니다.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0개월 근무하고 인턴제 사업에 지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졸 학력의 신체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복합장애를 가진 여성은 어리다는 이유로, 고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를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받고 성적 괴롭힘 피해자가 되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직장을 떠나야만 하는 환경이 그녀를 취업 낭인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녀가 처한 성적 괴롭힘 피해는 특정한 시기에 장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생한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그녀의 일생을 구성하는 온갖 요소들에 대한 부당한 사회 제도와 시선이 통째로 그 사건 안에 응축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치는 인연에 연연하는 어리석음을 꾸짖는 명언들도 많지만,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섬, 2015)은 한 사람이 온다는 건, 한 사람의 일생을 통째로 만날 수 있는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 말합니다. 그 일생을 겹겹이 포개고 있는 것들의 갈피를 아마도 더듬어볼 수 있을 것 같은 바람의 마음을 우리가 흉내 낼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2023년도 첫 번째 모니터링리포트 영화평에서 오재형 감독의 영화 〈양림동 소녀〉 속 주인공 임영희씨를 바람의 마음으로 환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이슈를 다루는 미디어가, 시설에서 나와 자립적인 생활을 꿈꾸는 이들을 맞이하는 지역사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을 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낼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섬, 2015)

2023. 7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김 용 구**



포커스



- ▶ **2023년 2분기 국회 의정 모니터링 수행**
손영수 | 선임연구원
- ▶ **언론 및 방송이 집중 보도한 '장애인의 날'**
한지윤 | 주임연구원
- ▶ **2023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 분석**
고영란 | 연구원

2023년 2분기 국회 의정 모니터링 수행

손영수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2023년 2분기에 해당하는 모니터링 사업의 기간은 23년 1월부터 3월에 해당되며, 국회회의록 홈페이지¹⁾를 통해 확인한 기간은 제402회 ~ 404회에 해당된다.

2023년 2분기 모니터링 대상 및 기간

	대상	모니터링 대상 기간	단원 모니터링 기간
구분	국회 회의록 - 국회 회의록 시스템 내 회의별 회의록	21대 국회 제402회 ~ 제404회	2023. 04. 18. ~ 2023. 05. 09.
		제402회 : 23.01.09. ~ 23.02.01. 제403회 : 23.02.02. ~ 23.02.28. 제404회 : 23.03.01. ~ 23.03.30.	

이러한 국회회의록 홈페이지 내 시스템을 통해 2분기에 해당되는 회의록 수는 182건(중복 제외)으로 검색되어졌다. 회의록 자체의 내용이 방대하고 정확한 발언 발체를 위해 키워드 검색을 통해 하되 해당 발언의 문맥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발언의 맥락과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집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Key Word

장애, 편의, 정신, 약자, 특수,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돌봄

발언 수집기준은 '한 회의에서, 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한 의원이, 장애인 정책 관련 중심으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발언한 내용' 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모니터단에게 해당의 내용들을 '선교육 - 단원별 발체 테스트 - 담당자 검증 - 실무 진행'의 절차로 진행하였다.

1) 국회회의록 회의록 검색(<http://likms.assembly.go.kr/record>)

1. 2분기 모니터링 일반 현황

1-1. 의원 발언 및 회의록 현황

2023년 2분기에 해당하는 국정감사의 의원 발언 현황 결과를 보면, 장애인정책 관련 발언을 한 의원 수는 총 23명이며, 발언 수는 총 47건으로 발언의원 1인당 평균 2.04건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현황 결과를 보면, 모니터링 대상 회의록은 182개로 이 중 발언 발생 회의록은 25개(약 13.7%)로 회의록 당 약 2.04개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결과를 2022년²⁾의 같은 기간 작년과 비교해보면 객관적인 발언 수나, 발언 발생회의록 수가 많아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류	의원 발언 현황			회의 현황			
	정책 발언 수	발언 의원 수	발언의원 1인당 평균 발언 수	모니터링대상 회의록 수	발언발생 회의록 수	발언발생 빈도	발생 회의록당 발언 수
2023년 (2분기)	47	23	2.04	182	25	13.7%	2.04
2022년 (2분기,3분기)	35	21	1.66	178	15	8.4%	2.33

1-2. 분야별 발언 수

기본적으로 센터에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2011년부터 장애인정책 발언을 분야 10개(대분류), 분류 53개(중분류), 주제(소분류)로 나누어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정모니터링 사업 역시 이러한 분류표를 통해 정책 발언을 수집하였다.

다만 발언 검토에 있어 회의록 자료가 방대하여 분야별로 1건의 발언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분야별 발언은 해당 분기에 이슈가 되었던 발언이나, 단원 의견을 반영하며, 분야별로 중복되는 성격의 발언과 1건 이하의 발언은 되도록 배제하였다.

분기	분야별 발언 수										
	복지 일반	보건 의료	고용	교육	문화 체육	접근 /이동권	정보 접근권	권익 옹호	여성	자립 생활	계
2분기	8	5	5	4	13	6	3	1	1	1	47

2) 2022년 2분기의 기간 동안 분석 최소요건 발언인 20건이 충족하지 않아 3분기와 통합하였음.

1-3. 분류별 발언 현황

1-3-1. 복지일반

복지 일반	복지서비스/시설	복지관련 법/제도	복지일반 예산	계
	1	5	2	8

복지일반 주요 발언

분 류	2023년 2분기
복지서비스/시설	-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반대 의견
복지관련 법/제도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장애인 언론노출 시 제한) - 장애인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의 신중함 기여 - 장애인판정조사 문항의 투명성 확보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에 대한 법률 재점검 필요(정신질환자 판단 여부)
복지일반 예산	- 장애인 요금감면 제도의 정부 지원 필요 - 장애인권리예산과 타 예산 간 형평성 지적

- ‘복지관련 법/제도’ 분류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언론 노출에 불필요한 반복 노출을 피해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취지와 관련된 발언이 있었고, 장애인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면 안된다는 발언, 장애인판정조사 문항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한다는 발언,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에 대한 법률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외에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있었다.

- 이종성 위원 (중략)

이번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과 관련해서 장애계의 반발이 있어서 곤욕을 치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지난 97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27년 동안 보건복지부 내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유일한 개방직 자리잖아요. 그런데 27년 만에 계속 장애인으로 임명해 왔던 그 전통을 깨고 비장애인을 임명해서 장애계의 반발을 크게 샀는데 그 취지,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차관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에.

우선 장애인 당사자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킨다는 그런 취지가 있고 그것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장애인 분야의 전문성 또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감수성을 행정에 반영하자는 취지도 있고 무엇보다 장애인 단체, 민간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시켜서 장애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소중한 의미가 있는 제도이니만큼 정부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말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 2023년 03월 23일, 제40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 발언 중

- ‘복지일반 예산’ 분류를 살펴보면, 공익적 운영에 따른 요금감면제도의 대상자(장애인 포함)에 더욱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장애인권리예산과 타 예산(반도체 관련)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발언이 있었다.

- 장혜영 위원 장애인 권리 예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규모는 약 1조 3000억 정도를 2023년 예산안에 증액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영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중략) 그런데 공교롭게도 규모가 거의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반도체법 5년간 7.3조 원이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1.4조 원인데 이게 거의 대부분 2개 기업에 몰아서 깎아 주게 되잖아요, 하나는 삼성전자, 다른 하나 SK하이닉스고.(중략)
왜 부자에게 돈을 주면 그건 투자고 빈자나 장애인에게 주면 그건 비용이라는 논리를 아직도 대한민국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1조 3000억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대기업 반도체 세금 깎아 주고 효과도 불확실한 정책을 하는 데에는 1.4조 원을 평평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양심으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중략)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전장연만 장애인 단체 목소리를 전달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들과 복지부 등에서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 이야기를 들어 가면서 편성을 할 겁니다.

- 2023년 03월 22일, 제404회, 상임위원회, 제2차 기획재정부위원회, 장혜영 의원 발언 中

1-3-2. 보건의료

보건 의료	보건의료 법/제도	장애예방/치료	계
	2	3	5

보건의료 주요 발언

분 류	2023년 2분기
보건의료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의료원법 상 장애인 차별적 문구 삭제 제안(심신 장애) - 장애인 비대면 진료 법안 관련 발언
장애예방/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비대면 진료의 효율성 질의 -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의 어려움(지방 병원의 노후화) - 장애인 주치의 지원 제도 실적 지적(홍보 부족)

- ‘보건의료 법/제도’분류를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법 상 ‘심신 장애’라는 문구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는 발언이 있었고, 장애인의 비대면 진료 법안의 정부 동의 의사를 묻는 발언이 있었다.

• 이종성 위원 (중략) 문제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는 거의 10여 년 전부터 이동에 제약이 있고 접근권이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한테는 이게 허용이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요구를 했었는데 정부가 찝끔찝끔 시범사업 좀 하다가 말고 시범사업 좀 하다가 말고 여태까지 정착이 안 됐는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사실 저는 이 1400만 명의 국민들이 이용하면서 여기에서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또 파생되는 어떤 문제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화시켜야 된다, 코로나 국면이 끝나 가지고 이게 다시 없어지기 전에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법안을 낸 건데 엇그저께 소위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이 조금 우려를 하셔서 가지고 안 됐어요.
일단 정부에서도 동의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 2023년 03월 23일, 제40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 발언 中

- ‘장애예방/치료’분류를 살펴보면 70세 이상의 장애인 비대면 진료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제고가 필요하다는 발언과 지방 병원 노후화에 따라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이 어렵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외에 장애인 주치의 지원 제도의 낮은 실적률은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는 발언이 있었다.

• 최재형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에 동의하는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여쭙습니다. 참여율이 낮다 그러는데, 지금 이용 장애인 비율이 전체 건보 적용 중증장애인의 0.17%라는 게 이게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주치의 관리 대상이 되는 인원이 0.17%라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용률이 낮아요?
• 보건복지부장관인정책국장 염민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이 제도를 알고 본인이 이용하겠다 하는 의사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본인 부담률이 10%인데 사실 30%보다는 낮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받으면서 내가 10%를 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부담도, 비용 부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재형 위원 홍보를 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부장관인정책국장 염민섭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아마 코로나의 상황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 2023년 02월 14일, 제40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최재형 의원 발언 中

1-3-3. 고용

보건의료	고용정책 법/제도	보호고용	일반고용	지원제도	계
	1	2	1	1	5

고용 주요 발언

분류	2023년 2분기
고용정책 법/제도	-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셜벤처에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포함 여부 논의
보호고용	- 장애인기업의 구매목표비율을 현황 고려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
일반고용	- 의무고용률 미달 지적(대법원)
지원제도	- 장애인촉진기금의 효율적 사용 건의(교육부)

- ‘보호고용’분류를 살펴보면 장애인기업의 구매목표비율을 현황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는 발언과 함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있었다.

- 김예지 위원 (중략)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장애예술인 활성화가 이 법안에 실효성 있는 게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근간을 마련했던 것이고 현장의 많은 기대와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구매비율 최초의 계획보다 낮아졌고 또 시행령에 포함된 예외 규정이 남발될 경우에는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게 됩니다.

장관님께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창작물 유통을 위한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님과 협의해서 예외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냥 막 해 주시지 마시고 엄격하게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에서 3%로 낮춰져 가지고 위원님께서 다소 실망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3%가 최적점으로 그게 협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신 예외 규정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저희가 내세운 장애인 프렌들리(friendly) 그리고 장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3년 03월 20일, 제403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 발언 중

1-3-4. 교육

교육	교육내용	교육 법/제도	계
	2	2	4

교육 주요 발언

분 류	2023년 2분기
교육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학교폭력 가중 조치 조항에 따른 현황 확인 필요 - 장애인 디지털 미디어 교육환경 제공 법안 실익 여부 논의 필요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 시험에 대한 배려 등 질의 - 시각장애인 대학생의 점자교과서 미지급 관련 질의

- ‘교육 법/제도’분류를 살펴보면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의 이행 현황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있었고, 장애인이 디지털 미디어 교육환경을 요구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있었다.

-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중략)

대체토론 부분 보시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이런 미디어를 인식하고 접근하고 하는 등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디지털 정보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중략)

- 서동용 위원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입법 실익이 있는지 또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중략) 장애인에 대한 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들은 장애인특수교육법이나 장애인평생교육법과 같은 개별법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요 이 법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략)

- 교육부차관 장상윤 맞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디지털 미디어 교육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여러 가지 용어로는 되고 있지만 실제로 법안을 만들거나 할 때 역할이 조금 충돌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교육 쪽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민 일반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을 갖출 때 방통위하고 저희하고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 2023년 03월 16일, 제404회, 제1차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서동용 의원 발언 중

- ‘교육내용’분류를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시각장애인 문제지가 제공되지 않아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시각장애인의 점자 교과서 보급 현황 및 교과서 이용 실태 등을 요구하는 발언이 있었다.
- 시각장애인 대학생의 점자교과서 미지급 관련 질의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각교과서, 소위 말하는 점자교과서 지금이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중략)
- 교육부교육복지돌봄지원관 김태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 교과서를 포함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중략)
- 강득구 위원 제가 알기에는 대상이 100이라 그러면 거기 대상에 맞게 잘 우리 학생들한테 배치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면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교과서 이용 실태 파악해 본 적 있나요?
- 국립특수교육원장 이한우 지금 학령기 학생들은 저희가 100% 공급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파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2023년 02월 16일, 제403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 발언 中

1-3-5. 문화체육

문화체육	문화체육 법/제도	장애인 문화생활	장애인체육	계
	8	3	2	13

문화체육 주요 발언

분류	2023년 2분기
문화체육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의무 배치 법안 논의 - 국민체육진흥법 적용 범위 질의(타법률과 중복 여부 확인)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내 조속히 통과 요구
장애인 문화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예술인 작품 등의 우선구매 관련 홍보대책 마련 필요 - 장애인예술인 활동의 의무규정 부과에 대한 논의 필요 - 장애인도서관 독립 청사 부지 관련 질의
장애인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시설 부족 - 스포츠 경기장 내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및 강화 필요

- ‘문화체육’분류를 살펴보면 장애인스포츠택지도자 의무적 배치와 관련된 발언이 가장 많았으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내 장애인관련 사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발언, 장애인예술인의 공연·전시의 정기적 개최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를 정부에 요구하는 발언이 있었다.

• 김예지 위원 (중략)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문체위를 통과했는데 이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인예술인 공연·전시 등을 일정 부분 예술 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것이고 1월에 문체위 통과해서 법사위를 갔는데 전체회의에서 지자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한 위원의 의견이 제시되어서 지금 제2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저는 개정안 대표발의한 의원이고 당사자로서 반대한 법사위 위원님도 찾아뵙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예정인데 국회 통과를 위해서 문체부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런 상황을 장관님도 인지하고 계시면서—장애인예술인의 염원이자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유념해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2023년 03월 20일, 제404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 발언 中

- ‘장애인 문화생활’분류를 살펴보면 장애인예술인 작품 등의 우선구매 관련 홍보가 미흡하여 실적이 저조하다는 발언이 있었고, 장애인예술인 활동 관련 향후 개정법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활동을 부여하는 것에 우려의 발언이 있었다. 이외에 장애인도서관의 독립적 건립 추진에 정부 노력을 요하는 발언이 있었다.

• 김예지 위원 (중략)

장애인도서관 독립 청사 문제입니다. 기존 장애인도서관이 다른 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같이 쓰고 있기도 하고 노후화도 됐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를 떠나서 지난 정부부터 죽, 또 초당적인 협력 아래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중략)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부지 선정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중략)

그래서 알아 보니까 2027년 이전 예정인 동작구 기상청 부지가 있더라고요. 교통 아주 편리하고 접근성도 좋아서 기재부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 활용계획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관님께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중략) 독립 청사 건립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 2023년 02월 22일, 제403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 발언 中

- ‘장애인체육’분류를 살펴보면,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발언이 있었고, 스포츠 경기장 내 편의시설 조사내용의 근거를 통해 접근성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있었다.

- 임종성 위원 소비자원이 축구와 야구 등 전국 스포츠 경기장 21곳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했었지요? 모르시나요?
경기장에서 장애인 접근성이 제한되는 사례들이 확인됐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조사 대상 경기장 매표소 중 53.2%가 정해진 기준보다 높게 설치되어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웠다고 조사가 됐고요. 또 조사 대상 경기장의 23.8%는 건축구조물 등으로 인해 장애인관람석의 시야가 방해되어 경기 관람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지적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장애인들의 스포츠관람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요. 추가로 문체부가 이번 소비자원 조사로 확인된 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야구를 관람한다 그래도 장애인 동선을 최대한 짧게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관람석을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 2023년 02월 20일, 제403회, 제1차 문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임종성 의원 발언 중

1-3-6. 접근/이동권

접근/ 이동권	건축/설계	교통	이동권관련 법/제도	이동권관련 예산	계
	1	1	3	1	6

접근/이동권 주요 발언

분 류	2023년 2분기
건축/설계	-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에 편의시설 제공 근거 마련 필요
교통	-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연계 현황 질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장애인 이동권 현황 질의(서울시) - 장애인 이동권 관련 결정 사례 지적(헌법재판소) -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연계 조항 필요(국토부)
이동권관련 예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예산 질의(기획재정부)

- ‘이동권 관련 법/제도’분류를 살펴보면 서울시 내 장애인 이동권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이동권 관련 결정이 미흡했었다는 지적의 발언이 있었다. 이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연계를 위해 각 지자체의 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국토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있었다.

•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중략) 이게 실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현실성, 현실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시도의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중략)

그래서 많은 지자체가 저희 국토부에서 제시한 현 시행령 개정안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소위 위원님들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방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략)

- 맹성규 위원 차관님, 이것 왜 법률에 담으려는지 취지는 알고 계세요?

(중략)

-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좀 더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고 방향성을 더 강조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 맹성규 위원 (중략)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호 측면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런 실제적인 필요가 있다.

다만 재정이나 이런 여건이 충분히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확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잖아요. (중략)

국토부 뜻대로 안 된단니까, 그것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국토부 뜻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법안을 가져오든지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라도 해야지 ‘우리가 지자체의 의견을 물으니까 다 반대하더라……’ 이걸로 되겠냐고, 설명이.

-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저희도 그래서 다음에 소위 수정안하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1-3-7. 정보접근권

정보 접근권	정보접근 법/제도	계
	3	3

정보접근권 주요 발언

분 류	2023년 2분기
정보접근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타버스 콘텐츠 내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 질의 -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물에 어문저작물 외 타 저작권 자료 확대 요구 - 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식품 표기 방안 가이드라인 요구

- '정보접근 법/제도' 분류를 살펴보면 메타버스 산업진흥에 따른 콘텐츠 내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기존 대체자료 제작물에 어문저작물만 해당되는 것을 타 저작권(드라마, 영화, 그림, 악보 등)에도 확대를 요구하는 발언이 있었다. 이 외에 식품 등에 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하는 발언이 있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중략)

사실 약은 포장이라든가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식품보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를 먹을 때도 캔이나 아니면 페트병이나 아니면 종이 재질이나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 달라야 되는데, 저도 국장 때 업계하고 현장미팅에 가 봤는데 열심히 하는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들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안은 전부 다 점자 표시보다는 QR코드를 통해서 돌출 부분을 인식하게 되면, 그 QR을 인식하게 되면 그 부분을 통해서 음성이라든가 수어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정보를 주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방법이 있는가……

사실 점자로 표시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제품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점자로 줄 수 있는 정보에는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시각장애인하고 접촉을 했을 때도 점자의 가독률도 낮다라는 점에서 장애인단체에서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혜영 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을 고려해서 병행하시면 되는데, 이걸 자율화시키게 되면 지금 컵라면 같은 경우에 상품, 뭐라 얘기하질 않겠지만 잘하는 데는 볼록 튀어 나와서 충분히 만질 수가 있는데 한 라면은 아예 종이 재질로 돼 가지고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만져도 느낌이 나지 않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율화가 되면 '나 만들었는데'라고 해 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연구하시고 어디까지는 어떻게 하고 글자 양이 좀 더 많으면 그 외에는 QR코드를 어디 표시해서 해라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걸 만드는 게 더 먼저였을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자율 의무하고 관계없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최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 2023년 02월 14일, 제40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최혜영 의원 발언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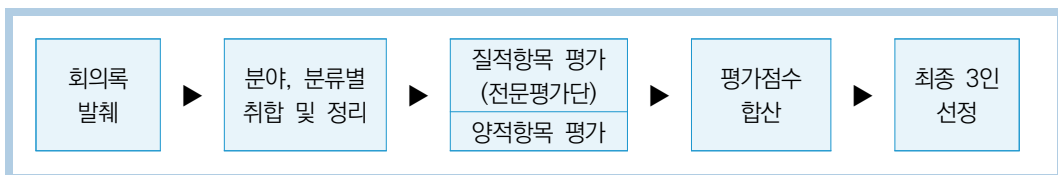
2.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2-1. 우수의원 선정 배경

- 모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조차도 장애인 인권과 복지 등의 정책과제는 종종 외면 받아왔다. 장애인을 대표하는 소수 비례대표의원들만 외롭게 분투하고 있으며, 몇몇 관련 상임위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질 뿐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국회 모니터링도 인식과 관심의 부족, 전문성 결여로 인해 장애인 정책에 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감시와 평가,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장애인 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포괄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동시에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장기적 비전을 기초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지속적으로 국회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감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의 수립과 정책의 공공성을 높이고, 장애인 정책의 발전과 인권 신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이에 2005년도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단은 국회의 본회의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하였다. 모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여,
- **장애인 정책의 발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한 우수의원을 선정함으로써 그 활동을 격려하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고자 한다.**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 백서 中,(2005)〉

2-2. 우수의원 선정 과정



국회의정 모니터링을 위한 ‘국회의정 모니터단원’(장애인 당사자 2명 포함)을 총 3명으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단원들에게 발언 발체 방법, 회의록 사전 발체 테스트를 포함하는 실 교육을 약 2주간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방식은 단원별로 일대일 직접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정리하면 약 3주간의 2023년 2분기의 발언 발체 모니터링 결과를 분야, 분류별 취합 정리하였고, 해당 자료를 자문위원(국회의정 평가단)의 평가를 거친 다음, 평가 결과의 합산을 통해 상위 3인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였다.

2-3. 평가항목

발언에 따른 점수를 계량화하기 위해 평가 항목은 크게 질적 항목과 양적 항목으로 나눈다. 질적 항목은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으로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양적 항목은 의원들의 발언 수이다.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양적 항목의 경우, 발언 수의 빈도수를 기준으로 분위로 구분하여 발언 수 빈도의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배점을 부여하였다.

국회의정활동 모니터링사업 발언점수 평가 항목

구분	내용	배점	비고
질적 항목	구체성	0~3점	해당사항 없음 0 내용별 발언에 대한 질적수준에 따라 1~3점 부여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양적 항목	발언 수	1건 0점 2건 1점 3건 이상 3점	발언 수의 빈도를 기준으로 분위로 구분하여 배점 부여

2-4. 결과분석

2-4-1. 일반적 현황

앞서 밝혔듯이 2023년 2분기의 의원 발언 현황 결과를 보면, 장애인정책 관련 발언을 한 의원수는 총 23명이며, 발언 수는 총 47건으로 발언의원 1인당 평균 2.04건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현황 결과를 보면, 모니터링 대상 회의록은 182개로 회의록 중 발언 발생 회의록은 25개(13.7%)로 회의록당 약 2.04개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발언의 분야를 살펴보면,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발언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복지일반 분야(8건), 접근/이동권(6건) 순으로 나타났다.

분류	의원 발언 현황			회의 현황			
	정책 발언 수	발언 의원 수	발언의원 1인당 평균 발언 수	모니터링대상 회의록 수	발언발생 회의록 수	발언발생 빈도	발생 회의록당 발언 수
2분기	47	23	2.04	182	25	13.7%	2.04

분류	분야별 발언 수										
	복지 일반	보건 의료	고용	교육	문화 체육	접근 /이동권	정보 접근권	권익 옹호	여성	자립 생활	계
2분기	8	5	5	4	13	6	3	1	1	1	47

2-4-2. 질적 항목 평가 결과

47건의 평가 대상 발언에 대한 질적 항목 평가를 위해 자문위원의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회의정활동 모니터링사업 발언점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각 발언에 따라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산출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질적 항목 평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언 당 질적 항목 평가 점수 결과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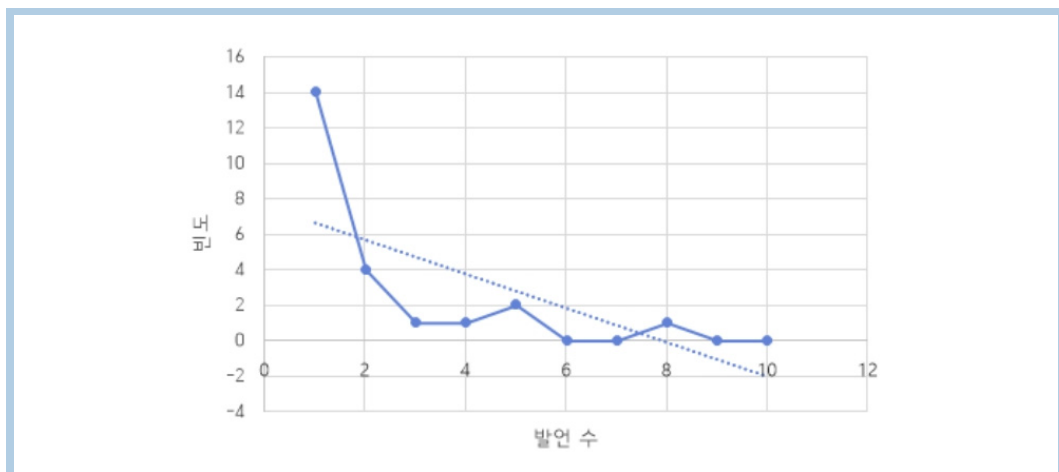
구분	빈도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질적 항목 점수	47	5.3	12.0	7.8(1.54)

2-4-3. 양적 항목 평가 결과

양적 항목 평가는 기존의 질적 항목 평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질적 항목 평가는 발언에 따른 평가점수에 대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언 수의 양적측면은 고려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1건이 발언을 한 의원의 평균점수와 10건의 발언을 한 의원의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이 두 의원의 발언 정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선정 배경에서도 밝힌 정책 참여도와 적극성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적 항목에 의한 평가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적 항목 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하였다. 여기에서의 양적 항목은 정책 참여도 및 적극성을 보여주는 항목으로써 '발언 수'를 활용하였다.

의원 발언 수 분포



구분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	평균(표준편차)
양적 항목	8	1	1	2.04(1.78)

양적 항목인 발언 수의 빈도를 보면, 한 의원이 최소 1건부터 최대 8건의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발언 수의 빈도를 4분위³⁾로 구분하여, 발언 수 빈도의 구간에 따라 0~3점까지 차등적으로 가점을 부여하였다.

발언 수의 빈도를 4분위로 구분한 결과, 1~2사분위(~50%) 1건, 3사분위(50~75%) 2건, 4사분위(75%~) 3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2사분위 1건은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2건은 1점, 3건 이상은 3점을 점수를 각각 부여하였다.

발언 수에 따른 가점 표

발언 수	발언 의원 빈도 수	퍼센트(%)	가점
1	14	60.87	0
2	4	17.39	1
3건 이상	5	21.74	2

2-5. 최종 결과

앞선 평가에 따라 질적 항목 평가 점수와 발언빈도에 따른 가점을 최종적으로 합산한 결과 2023년 2분기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하면 아래의 3인과 같다.

순위	발의자	발언 수	평균점수 (질적 항목)	발언빈도에 따른 가점	총점
1	김예지	8	9.7	3	12.7
2	최혜영	5	8.6	3	11.6
3	임종성	5	8.3	3	11.3

3) 분위수(Quantile)은 자료 크기 순서에 따른 위치값으로 정규분포를 크게 벗어나거나, 산포가 큰 상황에서 분위수가 대푯값으로 사용된다. 주로 사용되는 분위수는 100분위, 10분위, 4분위가 있다. 이중 4분위는 크기 순서로 나열한 자료를 4등분한 관측값을 의미하며, 1사분위는 25%, 2사분위는 50%, 3사분위는 75%, 4사분위는 100%이다.

언론 및 방송이 집중 보도한 ‘장애인의 날’

- 장애인 취업률 낮아, 장애인식부터 근무환경까지 개선 필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

한지윤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주임연구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개선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중 제8조 ‘인식 제고’에 따르면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인식 제고’라고 별도의 항목을 협약에 넣을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장애인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며 인권 보장을 위한 초석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사회는 선진국이라 할 만큼 발전했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제외되고 있고 장애인식은 오래 전부터 변하지 않았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장애인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미디어의 역할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언급할 만큼 중요하다. 정보가 중요한 사회에서 대중은 정보에 큰 영향을 받는다. 미디어는 다양한 매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달하면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 행동 하나 신경써야 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2023년 언론 및 방송모니터링’을 통해 미디어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8조 ‘인식 제고’의 취지에 맞게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비하표현 등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3년 언론 및 방송모니터링은 10개 중앙 일간지와 9개의 방송사, 1개의 OTT를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그 중 이번 리포트에선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중심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언론(신문) 및 방송에서 보도, 방영된 장애 관련 기사를 모니터링했다. 언론모니터링은 국내 10대 중앙 일간지로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를 모니터링한다. 범위는 인터넷 기사는 제외하고 지면 신문의 모든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방송모니터링은 지상파 SBS, KBS, MBC, EBS, 종편방송 JTBC, MBN, TV조선, 채널A, 보도전문채널 YTN이다. OTT인 넷플렉스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뉴스가 없기에 이번 리포트에선 제외했다.

방송사별, 언론사별 장애 관련 기사 수는 총 111건으로 방송이 14건, 언론은 97건이 보도되었다. 먼저 방송사별로 보면 KBS 6건, SBS 3건, JTBC 2건, MBC, EBS, MBN 1건순이다. TV조선, 채널A, YTN은 한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언론사별로 구분했을 때 경향신문 및 한국일보, 국민일보 14건, 한겨레 13건, 서울신문 12건, 세계일보 10건, 조선일보 8건, 동아일보 및 문화일보, 중앙일보 4건이다.

보도된 기사가 어떤 내용으로 보도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13가지로 세부 분류하여 분석했다. 내용 분류는 노동/취업, 교육/학습, 접근성/편의, 스포츠/레저, 문화/관광/예술, 보건/재활, 소득/생계, 자립/탈시설, 제도/행정, 인권/권리, 인물/인터뷰, 자선/봉사, 기타이다. 언론 및 방송을 통합해 보면 인권/권리 및 문화/관광/예술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취업 16건, 접근성/편의 10건, 인물/인터뷰 및 스포츠/레저 9건, 보건/재활 7건, 교육/학습 6건, 자선/봉사 및 자립/탈시설 4건, 소득/생계 및 제도/행정 3건, 기타 2건이 보도되었다.

매체별로 보면 방송은 인권/권리 6건, 스포츠/레저 3건, 접근성/편의 2건, 교육/학습 및 소득/생계, 인물/인터뷰 1건 보도되었다. 노동/취업, 문화/관광/예술, 보건/재활, 자립/탈시설, 제도/행정, 자선/봉사, 기타는 한 건도 보도되지 않았다.

장애 관련 기사 내용 - 방송(2023. 4. 17 ~ 23)

(단위: 건)

구분	SBS	KBS	MBC	EBS	TV조선	JTBC	MBN	채널A	YTN	합계
노동/취업	0	0	0	0	0	0	0	0	0	0
교육/학습	0	0	0	1	0	0	0	0	0	1
접근성/편의	0	0	0	0	0	1	1	0	0	2
스포츠/레저	1	2	0	0	0	0	0	0	0	3
문화/관광/예술	0	0	0	0	0	0	0	0	0	0
보건/재활	0	0	0	0	0	0	0	0	0	0
소득/생계	0	0	1	0	0	0	0	0	0	1
자립/탈시설	0	0	0	0	0	0	0	0	0	0
제도/행정	0	0	0	0	0	0	0	0	0	0
인권/권리	2	3	0	0	0	1	0	0	0	6
인물/인터뷰	0	1	0	0	0	0	0	0	0	1
자선/봉사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합계	3	6	1	1	0	2	1	0	0	14

10대 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관광/예술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취업 16건, 인권/권리 13건, 인물/인터뷰 및 접근성/편의 8건, 보건/재활 7건, 스포츠/레저 6건, 교육/학습 5건, 자선/봉사 및 자립/탈시설 4건, 제도/행정 3건, 소득/생계 및 기타 2건 보도되었다.

장애 관련 기사 내용 - 언론(2023. 4. 17 ~ 23)

(단위: 건)

구분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계
노동/취업	3	1	1	0	1	1	0	0	2	7	16
교육/학습	0	1	0	0	0	0	1	1	1	1	5
접근성/편의	1	1	0	2	1	2	1	0	0	0	8
스포츠/레저	1	1	0	0	1	0	0	0	3	0	6
문화/관광/예술	2	1	1	0	3	3	3	1	3	2	19
보건/재활	2	2	0	1	0	0	0	1	0	1	7
소득/생계	0	0	0	0	2	0	0	0	0	0	2
자립/탈시설	1	2	0	0	0	1	0	0	0	0	4
제도/행정	0	0	0	1	1	0	0	0	0	1	3
인권/권리	4	1	1	0	2	0	2	0	2	1	13
인물/인터뷰	0	1	1	0	0	1	1	1	2	1	8
자선/봉사	0	1	0	0	1	2	0	0	0	0	4
기타	0	2	0	0	0	0	0	0	0	0	2
계	14	14	4	4	12	10	8	4	13	14	97

이번 장애인의 날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노동/취업, 문화/관광/예술, 인권/권리이다. 문화/관광/예술 분야에서는 가수 김장훈이 장애인을 위한 공연을 개최했고 하나은행에서 주최한 장애인 미술 공모전 '아트버스'의 시상식, 시각장애인 연주회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인권/권리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에 대한 보도와 이를 기반으로 현재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기사가 이어졌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노동/취업이다. 점차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가 적고 취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사회가 어려우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취업률이 낮아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취업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것이다. 202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인구 중 36.4%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 즉 장애인의 50%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갖춰지고 있고 다양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낮다. 장애인식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취업이다. '장애인은 몸이 불편하니까

이런 일은 못할 거야', '장애인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일에 대한 능력이 있어도 먼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다. 아무리 환경이 개선되고 지원이 확대되어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취업 등 장애인이 직면한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

한겨레, 오피니언 25면, 2023.04.20.

오늘 '장애인의 날', 조선시대처럼 능력 위주 고용했으면

황보익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인하대 초빙교수

조선 시대에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세종 12년에는 부모가 나이 70살 이상이 된 사람과 독질(매우 위험한 병)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70살이 되지 않았더라도 시정(나이가 많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군역에서 면제)하고, 장애인과 그 부양자에게는 각종 부역과 군역을 면제했으며, 장애인을 정성껏 보살핀 가족에게는 표창제도를 실시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점복사, 독경사, 약공 등 장애인을 위한 전문직 일자리를 창출했다. 세종 16년에는 관현(관악기와 현악기)을 다루는 시각장애인 가운데 일부는 능력을 시험해 고용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은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 위주로 채용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단체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명통시(明通寺)를 설립해 소속 장애인에게 기우제 등 국가의 공식행사를 담당시키고 그 대가로 노비와 쌀을 줬다. 장애인

을 천시했던 서양과 달리 선진적 복지정책을 펼쳤을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였던 조선 시대를 엿볼 수 있다.

지금 시대에 와서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할당 고용제도를 도입했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법정 의무 고용률을 지키는 기업은 일부 한정됐고 대기업의 참여도 미진했다. 또한 경증장애인 위주로 고용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중증 장애인의 고용 소외가 문제점으로 부각했다.

공공 부문도 공안직군, 검사, 경찰, 군인, 소방 등 특정 직종에 장애인의 진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일자 고용의무적용 제외 직종을 2012년도에 완전히 폐지했으나 여전히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여럿 있다.

올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36%, 민간기업(상시 근로자 50인 이

상 사업장)은 31%이다. 2021년도 장애인 고용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31.0%, 그 가운데 정부 부문은 3.83%, 민간 부문은 2.96%로 나타나고 있어 민간은 아직도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문에서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의무 고용률을 대부분 달성했지만, 교육청과 헌법기관에서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고,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산하 출연·투자기관들도 미달한 곳이 있다. 2022년 장애인 고용 통계는 올해 5,6월에 발표하지만 증가세가 미미한 것으로 보아 의무 고용률을 채우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아직도 장애인의 인식 문제와 편견, 차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컨설팅이나 예술인 등 다양한 직종에 관심을 조금만이라도 둔다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4월20일은 43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이다. 조선 시대처럼 장애인도 능력 위주의 고용이 이뤄진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사회가 아니었다.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시각장애인이 국가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며 장애가 있다고 해서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장애인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현재 국회의원, 국무총리 같은 높은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장애는 단순히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일 뿐 이었다.

이렇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장애인의 능력을 인정해오던 사회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지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일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전에는 장애가 있어도 능력이 있으면 가능했던 사회생활이 어려워졌다. 이와 동시에 장애는 사회가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개인적인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로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재로 인해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조성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고 삼성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등 장애인의 취업에 대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금융기관 심지어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장애인의 채용률은 낮다. 중소기업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정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어도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다. 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상태여서 채용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 한다. 게다가 비장애인의 기준에서 비교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채용한다고 해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조선시대에 장애인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었던 건 사회가 장애를 인식하고 각 유형에 맞는 업무와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점이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정부,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미디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에서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장애인의 날에 미디어는 장애인의 취업률에 대해 현 상황을 보도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장애인이 겪는 취업문제, 개선방법, 대안, 사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보도함으로써 사회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정보를 통해 장애인을 인식하게 되며 더 나아가 장애인식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외에도 미디어를 통해 보도가 되면 홍보의 효과가 있다. 기업은 보도를 통해 홍보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장애인은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장애인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환경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번에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근무환경, 지원체계 등을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각 장애유형별로 근로능력 등도 보여줌으로써 다른 기업에게 장애인은 환경이 조성되면 충분히 근무할 수 있다는 걸 인식시켜준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근무환경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미디어의 보도는 여러 효과가 있다. 이런 효과가 지속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인의 취업률에 대해 보도한 것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이슈들로 인해 묻혀있던 문제를 드러냈다. 하지만 일시적인 보도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해야 한다. 다양한 정보와 이슈가 보도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보도가 이루어져야 사회가 문제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겪는 문제 중 일부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미디어는 단순히 보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전달할 필요하다. 정보를 제공하는데 부정적인 정보라면 인식은 악화되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를 지적해야 하고 올바른 표현으로 정정해야 한다. 이런 보도가 유지되어야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서울신문, 사회 08면, 2023.04.20.

“일자리에 장애인 맞추지 말고, 장애인에 일자리 맞춰야”

근중시료 채집 장애인 동료 상담 등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개발 노력야

기존 일자리에 중증장애인을 끼워 맞추고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이 하를 지급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가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성이 낮은 중증장애인을 최우선으로 고용해 최저임금 일자리를 제공

하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대표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서울, 경기, 전남, 전북, 경남, 충청 등에서 진행 중이며 1200여명의 노동자가 고용돼 장애인 권리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재정 지원 일자리로 매년 신규 직무를 발굴 중이다. 홀몸 어르신인 안부를 묻고 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어린이에게 동화를 읽어 주는 일,

지역 및 관공서 정원관리 등 45개 유형의 직무에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를 지원한다. 최근에는 비단벌레의 반짝이는 가루 등 곤충 시료를 만들기 위한 채집 활동도 추가됐다.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동료 상담 업무도 운영 중이다. 현영규 장애인 자립기반과정은 19일 “복지관에 나오던 장애인이 갑자기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원

하는지 의견 등을 듣는 업무”라며 “학대 등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인도 동료에게는 잘 이야기할 수 있어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분들을 현장 복지관에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억지로 ‘정상적 노동력’이 되도록 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현 존재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이상의 사회적 가치 창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적실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기자

때로는 미디어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떠한 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도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정부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위 기사는 장애인 채용의 기준을 일자리가 아닌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분명히 사회는 일자리를 기준으로 장애인을 채용해 왔다. 채용을 일자리가 아닌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다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당연한 언급이지만 미디어에서 한 번 더 언급함으로써 사회가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장애인의 날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로 사회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식이 개선되고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 미디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미디어 스스로가 인식해야 한다.

2023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분석

- 638.7조 중앙정부 예산 속 장애인예산 7.2조 원(1.13%)
- 보건복지부 예산 속 장애인예산 비율 하락

고영란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1. 모니터링 개요

2022년 12월 국회 심사를 거쳐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이 확정 의결되었다. 2023년 중앙정부 예산은 정부안에서 0.3조 원 감액된 608조 7천억 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2023년 3월 9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2027년)도 발표했다.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등한 삶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또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2023년 중앙정부 예산서에서 장애인 정책을 펼치기 위한 소관 부처의 관심과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에서는 매년 중앙정부 소관 부처의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서 장애인예산을 모니터링하여 분석한다. 2023년은 장애인 4명, 비장애인 1명으로 구성된 총 5명의 모니터링 단원이 센터에서 제공한 발췌키워드를 통해 소관 부처의 예산서에서 장애인예산을 발췌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예산을 분류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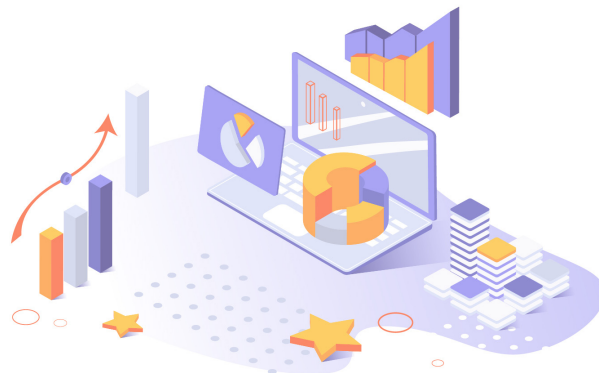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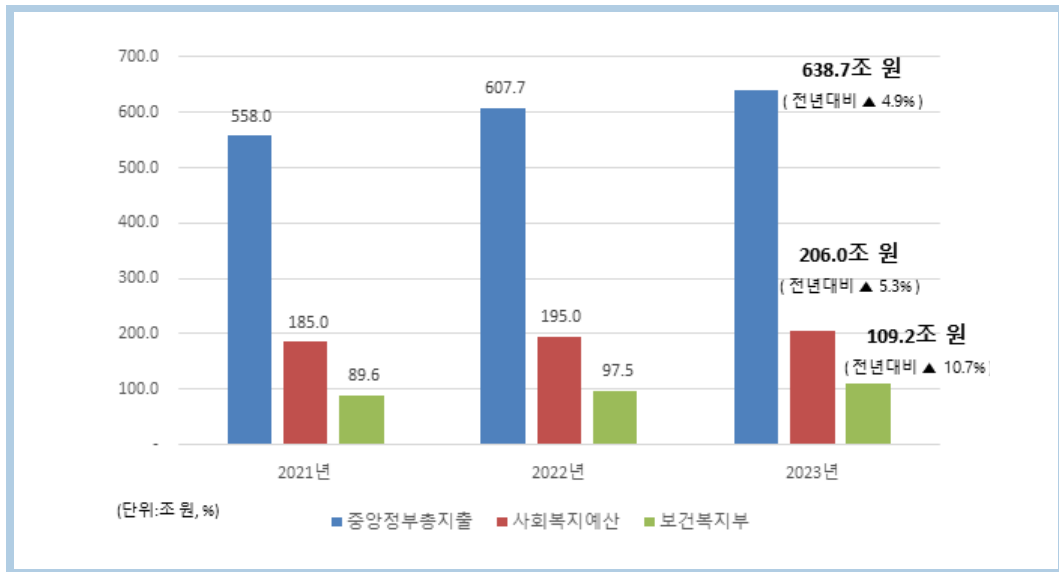


2.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가. 중앙정부 예산

2023년 중앙정부 총예산 규모는 638조 7000억 원이다. 2022년 607조 7000억 원에서 ▲ 4.9% (31조 3000억 원) 상승하였다. 이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206조 원으로 ▲ 5.3% (11조 원), 보건복지부 예산은 109조 2천 억 원으로 ▲ 10.7% (11조 7천억 원) 증액되었다.

중앙정부 예산(2021-2023)



나.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2023년 중앙정부 예산에서 본 센터가 발췌한 장애인예산은 7조 2000억 원으로 2022년 6조 4900억 원에서 9.9%(7000억 원) 상승하였다. 2023년 국가재정 총지출의 1.13%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예산 비율이 국가재정에서 1%대를 넘은 것은 2021년(1.16%)부터이다. 2022년 대비 0.06% 상승했다.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규모와 비율(2021년~2023년)

(단위 : 조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률 (2021년 대비)	2023년	증감률 (2022년 대비)
중앙정부 예산 규모	총지출	558.0	607.7	△ 8.9% (△ 49.7조 원)	638.7	△ 4.9% (△ 31.3조 원)
	사회복지 예산	185.0	195.0	△ 5.4% (△ 10조 원)	206.0	△ 5.3% (△ 11조 원)
	보건복지부 예산	89.6	97.5	△ 8.8% (△ 7.9조 원)	109.2	△ 10.7% (△ 11.7조 원)
장애인예산 규모		6.46	6.49	△ 0.5% (△ 0.03조 원)	7.20	△ 9.9% (△ 0.7조 원)
장애인 예산비율	총지출 대비	1.16%	1.07%	△ 0.29%	1.13%	△ 0.06%
	사회복지 예산 대비	3.49%	3.33%	△ 0.82%	3.50%	△ 0.17%
	보건복지부 예산 대비	7.21%	6.66%	△ 1.33%	6.60%	▼ 0.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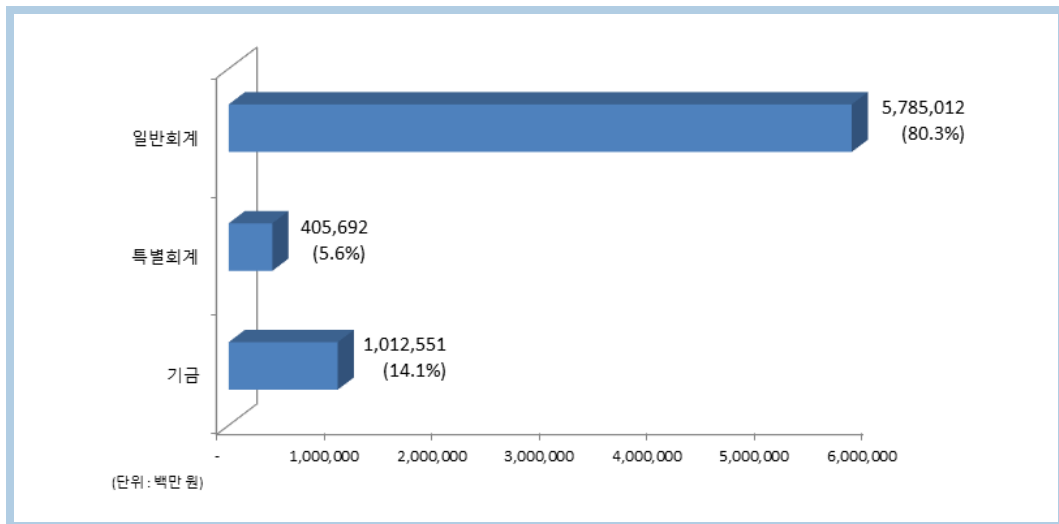
* 출처 : 열린 재정, 재정정보 참고, KOSIS 국가통계포털, 정책모니터링센터 장애인 예산발췌

2023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 대비 장애인예산 비율은 3.50%로 2022년 3.33%에서 0.17% 상승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장애인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6.60%이다. 2022년 6.66%에 비해 0.06% 하락하였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 9.9% (7000억 원) 증액되었지만, 보건복지부 예산 속 장애인예산의 비중은 줄었다.

다. 자원별 장애인예산

장애인예산을 자원별로 나눠보면 약 80.3%인 5조 7850억 원은 일반회계 예산이다. 특별회계 예산은 4056억 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다. 14.1%인 1조 125억 원은 기금으로 구성되어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에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 1895억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339억 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 중앙정부 자원별 장애인예산



기금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은 약 7664억 원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사업과 장애인고용관리 및 직업능력개발 등에 편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 158억 원은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성 보장 및 재난방송 운영지원(수어통역사) 등에 사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 126억 원을 통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약 12억 원(전년 동일)은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에 편성되었다.

3. 소관 부처별 장애인예산

2023년 중앙정부 소관 부처별 장애인예산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예산은 5조 1654억 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중 71.7%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해의 71.9%에 비해 0.2%가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 예산에서 장애인예산은 10년 넘게 보건복지부에 편중되어 있다.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중 0.1%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처는 60개 소관부처 중 보건복지부 외 11개 부처이다.

중앙정부 소관 부처별 장애인예산(2022년, 2023년)

(단위: 천원, %)

부처	2022년 예산	비율	2023년 예산	비율
보건복지부	4,665,413,104	71.9%	5,165,411,540	71.7%
고용노동부	766,299,164	11.8%	766,414,904	10.6%
국토교통부	507,163,000	7.8%	628,851,000	8.7%
국가보훈처	299,107,279	4.6%	311,533,194	4.3%
문화체육관광부	147,106,866	2.3%	160,383,142	2.2%
교육부	46,015,070	0.7%	89,182,121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445,960	0.3%	19,623,960	0.3%
방송통신위원회	948,300	0.0%	16,062,610	0.2%
문화재청	1,495,000	0.0%	12,647,000	0.2%
질병관리청	11,854,485	0.2%	11,652,447	0.2%
중소벤처기업부	12,875,000	0.2%	10,430,962	0.1%
경찰청	5,205,000	0.1%	4,905,000	0.1%
산림청	5,457,500	0.1%	1,925,400	0.0%
기획재정부	1,949,000	0.0%	1,809,000	0.0%
조달청	2,000	0.0%	930,809	0.0%
식품의약품안전처	248,000	0.0%	408,000	0.0%
여성가족부	340,000	0.0%	340,000	0.0%
소방청	-	-	164,000	0.0%
인사혁신처	83,030	0.0%	119,974	0.0%
농림축산식품부	4,800	0.0%	116,500	0.0%
환경부	5,000	0.0%	114,075	0.0%
행정안전부	-	-	94,000	0.0%
통일부	380,500	0.0%	43,800	0.0%
국세청	-	0.0%	31,122	0.0%
기상청	3,000	0.0%	30,000	0.0%

부처	2022년 예산	비율	2023년 예산	비율
병무청	17,289	0.0%	17,077	0.0%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2,400	0.0%	5,400	0.0%
농촌진흥청	5,419	0.0%	4,800	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452	0.0%	1,650	0.0%
국민권익위원회	-	0.0%	1,416	0.0%
합 계	6,488,427,618	100.0%	7,203,254,903	100.0%

- *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방부,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통계청 : 장애인예산 없음
-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특허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예산서 제공 받지 못하거나 예산서가 검색이 안 됨.
- * 해양경찰청 : 장애인 관련 별도 예산 편성되지 않음. 소속 장애 직원에 대한 예산, 지원 시설비 예산은 공통 편성되어 있음.

장애인예산액이 많은 순으로 6개 부처를 나열하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이다. 보건복지부 뒤를 이어 고용노동부가 7664억 원으로 10.6%로 작년 대비 1.2% 하락한 비율이다. 뒤를 이어 국토교통부는 6289억 원으로 8.7%이다. 2022년 7.8%에서 1.2% 상승했다. 국가보훈처로 3115억 원을 편성하여 4.3% 비율로 작년 대비 0.3% 하락, 문화체육관광부는 1604억 원으로 2.2%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장애인예산으로 892억 원 편성하면서, 중앙정부 예산 중 1.2% 비율을 차지했다. 작년 0.7%에서 0.5% 상승하였다. 상위 6개 부처 중 보건복지부(▽ 0.2%), 고용노동부(▽ 1.2%), 국가보훈처(▽ 0.3%)가 전년 대비 장애인예산이 줄어들었다. 반면 국토교통부(▲ 1.2%), 문화체육관광부(▲ 0.1%) 교육부(▲ 0.5%)는 장애인예산이 증가했다. 가장 비율이 높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가 전체 중앙정부 장애인예산의 91.0%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편성의 소관 부처별 편중을 실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 포함 10개 부처는 예산서 내에 장애인예산이 발체되지 않았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포함 9개 부처는 예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제공 받았지만, 발체를 할 수 없는 파일이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없었다. 해양경찰청은 장애인 관련 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소속 장애인 직원에 대한 예산, 지원 시설비 예산을 공통으로 편성하고 있음을 정보공개를 통해 밝혔다.

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예산은 5조 1천 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총예산(109조 45억 원)의 4.74%이다. 전년 대비 5천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1조 99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14억 원(13.07%) 증액되었다. 발달장애인지원은 공공후견 비용지원 외에 2569억 원으로 486억 원(18.74%) 증액,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2073억 원으로 220억 원(11.24%) 증액되었다. 전일제/시간제 일자리 및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에 편성되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이 1757억 원으로

2022년 1492억 원보다 266억 원(17.80%) 증액되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시·청각장애인 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예산 주요사업

(단위 : 억 원, 백분율 %)

세부 사업명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장애인활동지원	17,405	19,919	2,514	△ 13.07%
장애인연금	8,326	8,787	460	△ 5.48%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6,224	6,346	122	△ 1.74%
발달장애인 지원	2,083	2,569	486	△ 18.74%
장애인 일자리 지원	1,853	2,073	220	△ 11.24%
장애 수당	1,424	2,150	726	△ 0.37%
장애아동 가족 지원	1,492	1,757	266	△ 17.80%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	1,032	1027	- 9	▼ 3.43%

한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관련 예산은 2022년 6224억 원에서 122억 원 증액되어 6346억 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4% 상승하였다. 장애 수당은 1424억 원에서 2150억 원으로 0.37% (726억 원) 소폭 증액되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예산 주요사업 중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2022년 1032억 원에서 9억 원(-3.43%) 감액되어 1027억 원 편성되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다.

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장애인예산은 5조 1천 억 원으로 고용노동부 총예산(34조 9505억 원)의 2.19%이다. 전년 대비 1억 여 원 증액되었다.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84억 원(23.2%) 증액 449억 원 편성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및 지원사업이다.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사업은 819억 원으로 113억 원(16.0%) 증액되어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장애인훈련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관리지원의 근로지원인 예산도 증액되었다. 2023년 근로지원인 시급이 인상됨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지원 인원은 전년과 (1만 명) 같다. 보조공학기기지원 예산은 2022년 167억 원에서 192억 원으로 26억 원(15.5%) 증액되어 보조공학기기 개발 및 맞춤형보조공학서비스를 지원한다. 반면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관련 사업비는 1억 원 삭감되어 77억 원이다.

고용노동부 장애인예산 주요사업

(단위 : 억 원, 백분율 %)

세부 사업명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장애인고용장려금	2,624	2,974	350	△ 13.3%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107	2,330	223	△ 10.6%
장애인직업능력개발	706	819	113	△ 16.0%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364	449	84	△ 23.2%
장애인취업지원	306	335	29	△ 9.3%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206	210	4	△ 2.0%
보조공학기지원	167	192	26	△ 15.5%
장애인기능경기대회	78	77	-1	▼ 0.8%

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장애인예산은 6288억 원으로 국토교통부 총예산 (55조 7514억 원)의 1.13%이다. 철도운영지원(PSO 보상¹⁾) 사업은 교통약자를 위한 철도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외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예산에 전년 대비 1255억 원 (115.1%) 증액된 2346억 원을 편성하여 저상버스 도입 보조 1895억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339억 원,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 5억, BF인증²⁾사업 (연구용역 포함) 4.5억 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전년 17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44억 (254.4%) 증액하여 고령자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애인예산 주요사업

(단위 : 억 원, 백분율 %)

세부 사업명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철도운영지원(PSO 보상)	3,845	3,979	134	△ 3.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1,091	2,346	1,255	△ 115.1%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7	61	44	△ 254.4%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지원	3	3	0	0.0%

1)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보상 : 공공운임 감면, 벽지 노선 운영, 특수목적사업 등 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여 철도의 공익적 기능 확보. 교통약자에 대한 철도서비스 제공.

2) BF(Barrier free)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인증제도는 이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것.

라.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장애인예산은 3115억 원으로 국가보훈처 총예산 (6조 1886억 원)의 5.03%이다. 고엽제수당³⁾ 사업은 31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4억 원 (4.2%) 증액되었다. 고엽제 관련 특별지원 및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자 (고도, 중증도, 경도)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고엽제2세환자수당 (고도, 중증도, 경도)도 지급한다. 국제척수장애인체육대회참가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8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국가보훈처 장애인예산 주요사업

(단위 : 억 원, 백분율 %)

세부 사업명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고엽제수당(고도, 중도, 경도 장애)	2983	3107	124	△ 4.2%
국제척수장애인체육대회참가	8	8	0	0%

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예산은 3115억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총예산 (6조 1886억 원)의 5.03%이다. 언어산업 진흥기반 조성사업에 2023년 78억 원을 편성하여 한국어외국어점자 알몸치 구축을 지원한다. 장애인 대상 실감콘텐츠 드림존 조성은 34억 원을 편성되었다. 장애인체육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6억 원 (33.9%) 증액되어 302억 원을 지원한다. 함께누리 지원에는 262억 원으로 36억 원 (16.0%) 증액하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은 138억 원으로 9억 원 (7.0%) 증액하여,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에 편성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예산 주요사업

(단위 : 억 원, 백분율 %)

세부 사업명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349	378	29	△ 8.2%
장애인체육단체 육성 지원	226	302	76	△ 33.9%
장애인생활체육지원	275	281	6	△ 2.0%
함께누리 지원	226	262	36	△ 16.0%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129	138	9	△ 7.0%
한국어외국어점자 알몸치 구축	-	78	78	△ 100.0%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54	59	5	△ 8.3%
장애인 대상 실감콘텐츠 드림존 조성	-	34	34	△ 100.0%

3) 고엽제 수당 : 월남전 참전 및 국내전방복무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본인 및 피해자 후유증으로 인해 2세가 영향을 받아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과 치료비 보조를 위한 수당

바. 교육부

교육부 장애인예산은 892억 원으로 교육부 총예산 (101조 9979억 원)의 0.09%이다. 2023년에 장애인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과 사업운영으로 20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장애학생교육지원은 2022년 76억 원에서 79억 원(104.6억 원) 증액되어 155억 원 2배 이상 증액되었다.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통합교육 지원, 시청각장애 특성화 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한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사업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전년 대비 40억 원(137.4%) 증액된 70억 원을 편성하였다.

교육부 장애인예산 주요사업

(단위 : 억 원, 백분율 %)

세부 사업명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평생교육바우처지원(장애인 저소득층)	-	206	206	△ 100.0%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182	174	-8	▼ 4.3%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123	137	14	△ 11.4%
장애학생교육지원	76	155	79	△ 104.6%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30	70	40	△ 137.4%



4. 장애인예산 성격별 분류

다음으로 장애인예산의 질적 분석을 위해 예산의 사업명을 기준으로 성격별 분류를 하였다. 본 센터에서는 장애인예산을 정책의 성격 분야에 따라 소득보장, 의료재활, 자립 생활, 장애인시설, 고용 취업, 이동 편의, 문화체육정보, 기타 8가지로 나누었다.

8개 성격별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상승 폭을 보인 분야는 소득보장 분야로 2022년 장애인예산 중 21.9% 비율에서 2023년 27.9%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년 대비 5939억 원(41.8%) 상승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가장 먼저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8.9%), 의료보장(27.9%), 주거 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성격별 분류

(단위 : 억 원, %)

구분	2022년		2023년		전년 대비 증감	
	장애인예산	비율	장애인예산	비율	증감액	증감비율
소득보장	14,192	21.9%	20,131	27.9%	5,939	△ 41.8%
의료재활	5,831	9.0%	6,181	8.6%	350	△ 6.0%
자립생활	19,022	29.3%	20,060	27.8%	1,038	△ 5.5%
장애인시설	8,198	12.6%	7,894	11.0%	-304	▼ 3.7%
고용취업	8,085	12.5%	9,449	13.1%	1,364	△ 16.9%
이동편의	5,137	7.9%	2,536	3.5%	-2,601	▼ 50.6%
문화체육정보	1,612	2.5%	2,020	2.8%	408	△ 25.3%
기타	2,814	4.3%	3,761	5.2%	947	△ 33.7%
합계	64,891	100.0%	72,032	100.0%	7,141	△11.1%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화체육정보 분야는 947억 원 증액되어 2020억 원의 예산으로 총예산의 2.8%이지만 2023년에 비해 25.3% 증가, 기타 분야 33.7%, 의료재활 6.0%, 자립생활 5.5%, 고용취업 16.9% 증가하였다. 반면 장애인시설 분야는 304억 감소하여 7894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3.7%의 감소세를 보인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분야는 이동편의 이다. 2023년 5137억으로 총예산의 7.9% 비율이었으나 2601억 원 감소하여 3.5% 비율이다. 전년 대비 50.6% 감소하였다.

5. 총평

2023년 중앙정부 총지출은 638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3조 원(4.9%) 증액되었다. 중앙정부 예산에서 발채한 장애인예산은 7조 2000억 원으로 중앙정부 총예산 규모 대비 1.13%의 비율이다. 2022년 대비 중앙정부 총예산은 31.3조 원(4.9%) 증액되었고, 장애인예산은 전년 대비 0.7조 원(9.9%) 증가하였다. 총예산 대비 장애인예산은 1.13%(△0.06%), 사회복지 관련 예산 대비 3.5%(△0.17%)이며, 보건복지부 예산 대비 6.6%(▼0.06%)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 총예산과 사회복지 관련 예산 속 장애인예산 비율이 증가했지만, 보건복지부 예산 속 장애인예산 비율은 축소된 점은 아쉽다.

장애인예산의 소관 부처별 편중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예산은 5조 1654억 원으로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대비 71.1%이다. 장애인예산 편성 순서대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가 전체 장애인예산의 91.0%를 차지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예산 비중은 2021년 73.0%, 2022년 71.9%, 2023년 71.1%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평균 72.0%이다.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필요한 이동, 교육, 노동, 문화, 행정, 안전 등 모든 분야에 장애 포괄적 관점을 적용해서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인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9.9% 증액된 것은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등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되었다. 하지만 정신건강 증진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3.43% 삭감된 것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확대되었다는 측면과 반대되는 것이다. 소득보장(27.9%), 자립생활(27.8%)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표방하고 있는 개인예산제 도입, 통합서비스 제공, 건강주치의, 접근성을 높이는 문화예술 등에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예산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실효성 있게 편성되길 기대한다.





이슈포착



- ▶ **탈시설에서 자립생활전환으로**
진형식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 ▶ **UNCRPD 탈시설 가이드라인 분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편집부

탈시설에서 자립생활전환으로

진형식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장애인 역시 점점 고령화로 가고 있다.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인 113곳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 속한다. 대부분 비수도권이다. 인구소멸 위기 상황에서도 수도권은 점점 커지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을 강조했지만 수도권 비대화와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탈시설 지원서비스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크게 작용한다.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 동향도 중앙집권적 체계로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시설복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의 증대, 그리고 복지적 관점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시설보호와 관련된 일련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시설거주자들의 처우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부족, 수혜자 불만족, 인권 침해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다. 사회복지 시설은 폐쇄적·획일적·집단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된 생활방식에 의해 시설거주자가 시설체제에 순응하도록 하여 시설운영의 용이함을 도모해옴으로써, 시설거주자의 사회적 자립능력 결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보편성에 입각하여 시설거주자를 지역사회와 격리시켜 수용 보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시설거주자의 개별성을 강조한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서구에서 추진되어 온 탈시설화 정책은 기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이 확산되면서 종래의 수용시설 중심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대상자들의 거주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자립생활의 패러다임도 “시설 밖 세상 속으로”를 외치며 탈시설에서 거주전환, 거주전환에서 자립생활전환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이제는 자립생활이 시설에서 나오는 탈시설만이 자립이 아니며 주거공간의 변화만이 자립이 아니다. 이동권을 시작으로 활동지원서비스는 물론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문화여가 까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시설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지역사회로 나와 독립적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못하고 있으며 장애부모와 단체들은 국가책임제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다못해 시설장애인들이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자립할 경우 자립생활 정착금도 못받고 있는 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활동지원시간 추가 역시 2년 후에는 소멸이 돼서 지속적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절실한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이중고가 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탈시설지원사업으로 지원주택 공금을 하고 있으나 주거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지 노동권과 교육권. 건강권에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놓여있다,

이에 한자연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자립생활 운동을 해오고 있었으며 이번 서림케어드림을 시작으로 시설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나와 진정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연계사업은 물론 자립생활을 위한 직접지원을 하려한다.

서림케어드림은 충청남도 서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활거주인이 약120명 정도의 대형 거주시설이다 지난 2023년 5월 30일 한자연은 서림케어드림과 협약을 맺고 서림케어드림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거주인들을 단계적으로 자립시키기로 하였으며 지난 6월 25일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20명의 자립생활 희망자와 40명의 자립생활 가능자로 구분하여 지원하려 한다. 서림케어드림에서 한자연을 파트너로 삼은 이유는 전국 장애인 단체 중에서 전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당사자 조직이며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당사자 중심에 입각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비거주시설 전달체계로서 전국 30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113개소가 한자연 소속 지역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다. 수년간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자립지원, 탈시설 및 주거지원, 활동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장애인복지발전과 장애인당사자 기반의 서비스 변화에 큰 성과를 이룩해 내고 있다. 그렇기에 한자연과 한자연 소속 지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탈시설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전환지원을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물론 지원하는 과정에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수없이 발생할 것이나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한자연과 서림케어드림이 함께 추진하는 거주시설장애인에 대한 단계별 탈시설 자립생활전환지원서비스가 힘들 것이다.

이번 탈시설을 통하여 자립생활전환이 사회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 단체가 모두 함께 자립생활 솔루션을 구축하여 시설장애인들이 지역으로 나와 독립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길 기원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전환지원 사례가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UNCRPD 탈시설 가이드라인 분석

- 국내 탈시설 쟁점을 중심으로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편집부

I. 들어가며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2006년 12월 채택, 2008년 5월 발효)의 원활한 국내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보고서 심사, 제안 및 권고 기능을 수행한다. 그 외에도 선택의정서 가입 당사국을 대상으로 개인 및 단체 진정 접수 및 심사, 협약을 위반한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개인 자격의 장애인 권리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 당사국의 정치적 견해에서 독립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애인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과 장애인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모두 영문약자로 CRPD를 사용하고 있다.

CRPD는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2022년 8월에 진행하고, 최종견해를 같은 해 9월 9일에 공개했다. 총 73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4개 단락은 협약의 국내이행 관련 우리 정부에 대한 제안 및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2021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채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CRPD는 대한민국 정부에 협약 19조 이행 관련해, 지속적인 시설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한 예산 및 다른 조치를 포함한 노력의 부족,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필요한 지원 서비스 제공의 부족,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권리와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 및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 지에 대한 선택권과 특정 거주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와 공공기관의 인식 부족, 느슨한 탈시설화 전략 이행, 특히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지적 혹은/그리고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위한 재정착 프로그램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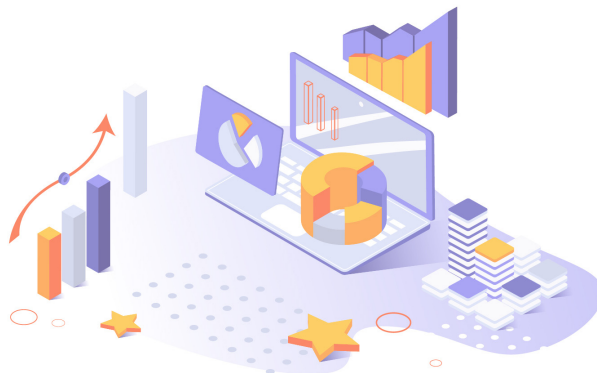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협약에 부합하고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를 포함토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형태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특정 형태의 삶의 방식에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분리에 반대하는 지역사회 통합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거주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의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COVID-19 팬데믹 등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생명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긴급 탈시설 추진 조치 개발(협약 10조 - 생명권 관련 권고), 노동시장 접근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노동 환경 구축(협약 27조 - 근로 및 고용)을 강조하고 있다.

CRPD는 협약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관련 최종권해가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동참에 관한 일반논평 5호(General comment No. 5 on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UNCRPD, 2017년)’와 이를 보완한 ‘긴급 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UNCRPD, 2022년)’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일반논평 5호는 물론 ‘장애인의 자유 및 안전 관련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CRPD, 2015년)’ 보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19조 관련 최종권해의 국내이행 절차에서 14조는 물론 10조, 27조를 포함한 관련 조항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국내 탈시설 관련 쟁점을 다루고, 현행 탈시설 로드맵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장애 시민사회가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 자체가 협약 19조, 관련 일반논평 5호, 14조 이행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매우 분석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해석의 추가보다는 요약해 공유하고 국내 탈시설 쟁점 및 로드맵 재검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마중물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UNCRPD 탈시설 가이드라인 분석

1. 가이드라인 근거

가. 협약 19조

가이드라인의 기초가 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동침)는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이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 보장받고,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며, 활동보조를 포함해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9조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더불어 시민적·정치적 권리 또한 수반하며, 인권의 상호관련성·상호의존성·불가분성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다.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는 모든 규범에 담긴 경제적·시민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이행될 경우에만 실현 가능하다. 국제인권법은 즉시 발효되는 의무와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또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가 위중한 상황일지라도,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기도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제2조에서 연유된 ‘점진적인 실현’은 가끔 이용가능한 자원의 한계를 이유로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이행을 늦추는 핑계로 이용되거나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는 의무가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동 규약 제2조는 규약이 당사국에 부과하는 일반적인 법적 의무의 본질을 기술하고 있다. 점진적인 실현을 규정하고 있고 이용가능한 자원의 한계에 따른 제약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해당 권리를 “...차별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2조 제1항 상의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약속이다. 해당권리의 완전한 실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되 목표를 향한 조치는 해당 국가에서 규약의 효력이 발생하면서부터 합리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밟아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나. CRPD 일반논평 5호

CRPD는 협약 당사국들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의 이해를 당사국에 제공하고 협약에 부합하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탈시설 가이드라인의 또 하나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일반논평 제5호(2017. 10. 27.)를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절차상의 권리 부여', 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권리를 알리고, 권리행사 방안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는 '역량강화훈련 제공', '정신장애인 및 지적장애인과 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시설 수용을 철폐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기간과 적합한 수준의 예산을 제시한 명확하고 목표가 분명한 '탈시설 전략의 채택', '합리적인 비용의 접근 가능한 주택', '기존 시설 및 주거서비스 탈시설 전략',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 구축', 대표단체를 통한 '협약의 참여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협약 14조 및 가이드라인

협약 14조(개인의 자유와 안전)는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유로우며, 장애인에게 법적인 구속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제인권법에 의거하여 그 절차상 안전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방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발생한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가 즉각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의무에 해당한다.

법적 구속이 이루어질 경우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적절하고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조치 의무가 포함된 것은 법적 구속 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을 처우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형식을 막론하고 연행 및 억류, 구금 하에 있는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애인이 자신 의사에 반하여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동 조항을 통해 장애인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사법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사법절차상에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편의의 제공은 최대한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협약 문구의 성안과정에서 동 조항과 관련하여 특히 정신장애인의 시설 강제수용에 관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비자발적 혹은 강제 수용시설 입소에 대한 명시나 언급은 모두 삭제되었다. 따라서 동 조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여 그 해석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동 조항에서는 법에 의한 구속이라 할지라도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닌 장애인의 의사 또는 의지에 반하는 자유—예를 들면, 이른바 공공안전을 이유로 하는 예방적 차원의 구금—의 박탈은 불법적이며, 법에 의한 구속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등의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가이드라인 개요 및 국내 탈시설 로드맵

가. 가이드라인 개요

CRPD는 ‘긴급 상황을 포함한 탈시설¹⁾ 가이드라인’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동참에 관한 일반논평 5호’ 및 ‘장애인의 자유 및 안전 관련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완 목적으로 채택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발생 전후의 장애인의 권리와 삶, 시설에서 경험했던 폭력, 방임, 학대 및 고문에 대한 해로운 영향을 조명하고 만연한 시설수용을 폭로하는 장애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500명이 넘는 장애인, 장애여성, 장애소녀와 소년, 시설수용 생존자들, 알비노(백색증), 풀뿌리 단체와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 세계 7개 지역 간담회를 통해 참여하였다.

가이드라인은 탈시설화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환경 조성 등 협약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 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 실현을 위한 당사국의 이행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대한 금지,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법률·정책·제도의 폐지, 시설 혹은 시설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 금지를 포함한 시설화 중단, 학대·폭력을 방지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탈시설 원칙과 이행 절차에서 고려해야할 주요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그 구성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 가이드라인 목적과 수립 절차

II. 시설화 종식을 위한 당사국들의 의무

III. 탈시설화 절차의 핵심요소 이해와 실행

- A. 시설화
- B. 탈시설화 절차
- C. 선택권과 개인의 의지 및 선호에 대한 존중
- D. 지역사회 기반 지원
- E. 기금과 자원 할당
- F. 접근 가능한 주거
- G. 장애인의 탈시설화 절차 참여

1) 이 글에서는 용어 ‘deinstitutionalization’에 대한 번역을 ‘탈시설화’로 명확히 하지 않고 국내에서 통용되는 ‘탈시설’과 구분 없이 혼용해서 사용함

IV. 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 기반 탈시설화

- A. 교차성
- B. 장애여성 및 소녀
- C. 장애아동 및 청소년
- D. 노년 장애인

V. 법과 정책 체제의 작동

- A. 실행 가능한 법적 환경 조성
 - 1. 법적 자격에 대한 권리
 - 2. 사법접근에 대한 권리
 - 3.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4. 평등 및 비차별에 대한 권리
- B. 법적 구조와 자원
 - 1. 입법
 - 2. 시설현황과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
 - 3.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 4. 지원체계의 새로운 요소 파악
 - 5. 지원인력 분석
- C. 탈시설화 전략과 행동계획

VI. 포용적인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체계 및 네트워크

- A. 지원 체계 및 네트워크
- B. 지원 서비스
- C. 개별화 된 지원 서비스
- D. 보조기술
- E. 소득지원

VII.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주류 서비스에 대한 접근

- A. 퇴소 준비
- B.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VIII. 분쟁을 포함한 위험 및 인도주의적 비상 상황에서의 긴급 탈시설

IX. 구제, 배상 및 보상

X. 세분화된 정보

XI. 탈시설화 절차 모니터링

XII. 국제협력

나. 국내 탈시설 로드맵

1)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대한민국 정부, 2021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2019. 8)’에 대한 응답이었으며, 인권위의 정책 권고는 CRPD가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4. 10. 3.)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 것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정신건강 케어에 대해 ‘장기입원방식의 시설화 모델에서 지역사회 치료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권고(2013. 4.)에 기초한 것이었다.

2) 로드맵 체계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하였음을 인권위에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정부의 로드맵이 인권위가 권고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중,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수립,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 사항 중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계획수립 원칙과 지침 마련, △노숙인 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다른 유형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등이 미비하여,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정부의 로드맵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가이드라인 분석

가. 시설화 종식을 위한 당사국의 의무²⁾

1) 시설수용의 협약위반의 문제

시설수용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19조)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으로 협약 제5조(비차별 및 평등) 위반
- 장애인 법적 행위능력의 실질적 거부로 제12조(법 앞의 평등) 위반
- 손상에 근거한 구금 및 자유의 박탈에 해당하여 제14조(장애인의 자유와 안전) 위반
- 진정제, 안정제, 전기치료 및 전환요법 같은 향정신성약물을 사용하여 장애인을 강제적 의료 개입에 처하게 함으로써 제15조(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 형벌로부터의 자유), 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7조(개인의 고유성 보호) 위반
- 장애인을 자유롭게 사전 고지된 동의 없이 약물과 기타 개입에 노출시키며, 이는 제15조(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 형벌로부터의 자유), 25조(건강) 위반

2) 이후 기술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국내 탈시설 로드맵 쟁점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함

2) 당사국 의무 이행 방향

당사국은 시설종식을 위해

- 지역사회 지원과 서비스의 부족, 빈곤, 낙인을 이유로 시설을 유지하거나 폐쇄 지연 정당화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포괄적 계획, 연구, 시범 사업 또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이유로 탈시설 개혁을 지연시키거나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한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보호 조치 혹은 "선택"으로 시설수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 코로나19 등 공공 보건 긴급 상황을 포함한 위기상황을 이유로 시설 종식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개별적인 위험을 이유로 한 시설수용을 금지(개별적 상황의 일반화 금지)해야 한다.
- 보호를 이유로 한 장애아동의 시설수용 금지(가족과 함께 살 권리, 지역사회 속의 가정에서 생활환경 우선 고려)해야 한다.
- 개인에게 즉시 시설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신 건강법 등 협약 제14조에 부합하지 않는 법 조항에 의한 모든 구금을 취소해야 한다.
- 장애를 이유로 한 비자발적 구금의 금지, 수용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신규 배치, 신규 입원 및 신규 시설, 병동 설립, 기존 시설의 보수 및 개조를 금지해야 한다.

나. 탈시설 절차의 핵심 요소

1) 시설 수용의 의미

시설수용은 아래와 같은 특징적 요소를 지니며, 요소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없거나, 바뀌거나, 제거되는 것만으로 지역사회 기반 거주형태로 여겨서는 안 된다.

- 지원(assistance)을 타인과 의무적으로 공유함, 지원 제공 인력에 대한 영향력이 없거나 제한적임, 지역사회 자립생활로부터의 격리 및 분리, 일상 결정에 있어 본인의 통제 결여, 누구와 함께 살 지 선택권 부족, 개인의 의지 및 선호와 무관한 일상의 경직성, 특정한 통제 하에 단체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활동을 수행, 동성적 관점의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환경에 관리감독, 동일한 환경에 장애인 수의 불균형

2) 탈시설 절차

- 탈시설 절차는 시설을 관리하고 지속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시설 수용의 영향을 받은 이들을 비롯한 장애인이 주도해야 한다. 또한 환경 개선, 병상 추가 확보,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 시설 명칭 변경, 정신건강 법률의 '최소 제한의 원칙' 과 같은 기준 적용 등 협약 제 19조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 시설 유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기로 "선택"했다거나 이와 유사한 주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3) 지역사회 기반 지원

- 당사국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양질의 개별화된 지원과 포괄적인 주류 서비스 개발을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
- 활동지원서비스는 개별화되어야 하며, 개인별 욕구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이용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고용주 역할을 하거나 다양한 제공기관의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스스로 서비스를 관리하는 정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은 시설을 떠나기 전부터 활동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탈시설 직후부터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소규모 그룹홈'을 포함한 단체 주거, 보호작업장, '임시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전환홈(체험홈), 주간보호 센터(Day-care centres) 혹은 지역사회 치료 명령과 같은 강제 조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볼 수 없다.

4) 접근 가능한 주거

- 탈시설한 사람들을 공동주택이나 집단 마을에 몰아넣고 의료 및 지원 패키지와 함께 주거를 제공하는 것은 협약의 제19조 및 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는다. 시설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는 기관이 관리하는 곳이어서는 안 되며, 의료 또는 특정 지원 서비스 수용을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 적절한 주택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임대 기간의 법적 보장,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자재, 시설, 인프라 및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경제성, 거주 가능성, 접근성, 위치, 문화적 적절성 등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5) 장애인의 탈시설 절차 참여

- 서비스 제공자, 자선단체, 전문가 및 종교 단체, 노동조합 및 시설을 유지하는 데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탈시설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협약 제19조 및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의 피해, 그리고 탈시설 개혁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이해 제공

다. 장애인의 존엄성 및 다양성 기반 탈시설화

- 당사국은 장애인의 "취약점" 또는 "약함"이 탈시설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탈시설 과정은 장애인의 존엄성 회복 및 다양성 관련 인식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손상을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 능력 평가는 차별적이며 개인별 요구사항 및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장벽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 장애인 가족이 탈시설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성인 장애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에는 장애인을 시설에 장기 또는 단기적으로 배치하는 어떤 형태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며, 장애여성 및 소녀, 장애아동 및 청소년, 노년 장애인의 존엄성 및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 당사국은 장애가 있는 모든 아동에게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가족에는 기혼 및 미혼 부모, 한부모, 동성 부모, 입양 가족, 친족 돌봄, 형제·자매 돌봄, 확대 가족, 대체 가족 또는 위탁 돌봄이 포함될 수 있으나, 원가족 내 배치를 대안 가족 구성보다 먼저 고려해야 하며, 장애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시설에서 살기를 "선택"할 수 없다.
- 탈시설 노력에는 치매 환자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노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치매인 마을"을 비롯한 노인대상 시설은 모두 탈시설 대상이 되어야 한다.

라.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 활성화

1) 실행 가능한 법적 환경 조성

- 전반적 법률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시설을 지연하지 말아야 하며, 후견인, 강제적인 정신건강치료 또는 기타 대체 의사 결정 등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관한 법률 개혁은 탈시설과 동시에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
- 장애를 이유로 한 구금에서 장애인을 해방하고 새로운 구금을 방지하는 것은 즉각적인 의무이며 재정적인 사법 또는 행정 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2) 자원

- 현재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을 확인하고 이를 장애인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서비스로 재할당해야 한다.
- 장애인의 의지와 선호에 기초하지 않거나 의료화 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 모든 장애인이 실질적 선택권을 가지며,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 선택지는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3) 탈시설 전략과 실행 계획

- 탈시설 계획은 일정, 기준, 그리고 인적/기술적/ 재정적 자원 배당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당사국은 가용 자원을 지체 없이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탈시설 전략은 전 이행 과정에서 범부처 접근이 필요하며 고위급 정치 리더십이 개입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 개혁을 이끌고 직접 정책과 세부계획, 그리고 예산을 결정하기 충분한 권한을 가진 장관 및 이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조율해야 한다. 탈시설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과 장애아동, 특히 시설수용 생존자 대표단체가 참여하고 이들과 협의해야 한다.
- 장애인, 특히 시설수용 생존자 및 그 대표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과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밝힌 선언을 작성하고, 이 선언이 탈시설 전략 및 계획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마. 포용적인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체계 및 네트워크

1) 지원체계 및 네트워크

- 지원인과 지원집단, 지원 네트워크는 장애인만 선택할 수 있다. 사법 혹은 의료당국, 가족 또는 서비스 제공자 같은 제 3자가 선택할 수 없다.
- 동료지원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시설과 의료 전문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장애인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 장애인이 가족의 지원을 받기로 선택한 경우, 그 가족에게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은 가족의 지원을 받다가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에서 장애아동이나 성인을 단기간이라도 시설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2) 지원서비스

- 장애인은 격리되어서는 안 되며, 장애인에 대한 고립을 강화시켜서도 안 된다. 주간보호시설(Day-care centres)과 보호 고용은 협약 위반이라 할 수 있다.
- 시설 수용 이후 원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영구적인 독립 주거 자격을 박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 노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 내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이 노인 연령에 도달했다고 활동지원서비스를 박탈해선 안 된다.

3) 소득지원

- 장애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소득지원 대상 자격이 개인이나 가구의 일반 소득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장애인의 직업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자립생활 비용을 충당하는 재정지원을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장애인의 직접적 통제 하에 장애인 서비스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주된 양육자는 그들이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 어떤 서비스를 시설 밖에서 받는지 등 필요한 형태의 지원과 합리적 편의제공과 관련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택 범위를 보장해야 한다.
-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가난은 시설수용의 가장 주된 요인이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성인과 그들의 부양가족, 친척, 장애아동의 가족에게 보편적 소득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대상의 고용상황과 무관하다.

바.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주류 서비스에 대한 접근

- 당사국은 주류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적정평가에 근거한 보류 또는 거절, 가족이나 사회 서비스, 정기적 약물 복용, 장애의 '중증도'나 현재 파악되는 지원 강도,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새로운 진단, 혹은 어떠한 다른 실격 조건에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 교육과 고용 등의 주류 서비스를 모두가 이용 가능하고 접근가능하게 만들고, 합리적 편의를 보장함으로써 시설수용을 방지해야 한다.
- 과도기적인 시설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살기위한 임시조치 또는 디딤돌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당사국은 시설 직원들이 탈시설의 인권적, 회복적, 인간중심적 의미에 기반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 가족 구성원, 친구 혹은 기타 신뢰 가능한 사람을 탈시설 계획 과정에 포함할 수 있다.
- 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당국 및 인력, 사법 및 법률 집행 인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권리와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에 대해 교육 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온 이후 사람에 대한 행정적, 법적 감시를 금지해야 한다. 시설 기관과 인력은 지역사회에서 '연속적인 돌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사. 분쟁을 포함한 위험 및 인도주의적 비상 상황에서의 긴급 탈시설

- 전염병, 자연재해, 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당사국은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가속화해야 한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는 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책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예방조치에 장단기 탈시설 계획 변동이 반영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긴급 상황에서는 건강 위험이 가장 높은 장애인에게 우선적인 탈시설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 긴급 상황에서의 탈시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가속화하려는 당사국의 계획을 장애인, 특히 시설 생존자의 대표 조직에 알리고, 이 단체들은 긴급 상황 대응, 구호 및 복구 프로그램 및 정책의 설계,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 당사국은 긴급 상황 이후 시설이 재건되거나 시설 내 인구가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 구제, 배상 및 보상

- 당사국은 보상, 배상, 회복 및 기타 형태의 책임을 요구하는 장애인에게 개별화되고 접근 가능하며 효과적이며 신속하고 참여적인 사법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시설수용에 관여한 당국과 전문가들은 배, 보상 체계 구축 및 실행에서 역할을 담당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 보상 메커니즘은 장애인 시설수용으로 인한 모든 형태의 인권 침해를 인정해야 한다. 보상과 배상은 지속적인, 결과적, 교차적 위해를 포함하여 시설수용 중, 탈시설 후에 입은 인권침해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포함한다.
- 당사국은 시설수용을 경험한 장애인을 대표하는 모든 단체와 협상하고, 시설수용 생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시설수용의 결과로 빚어진 고통과 어려움 및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은 시설 수용 생존자들에게 자동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형태의 사법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 배상금은 보상, 가할 및 재활을 포함하는 재정적 보상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피해복구를 위한 건강 서비스와 치유 과정을 비롯한 모든 권리 보장이 포함된다. 또한, 재발방지 보장이 수반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에 기반한 구금 및 시설수용, 장애와 관련된 고문과 학대를 초래하는 다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회복, 가할 및 재활은 개인의 요구와 그들이 경험한 손실 또는 박탈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자녀 또는 원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소유물을 되찾는 등 당사자의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욕구와 희망을 충족해야 한다.
- 당사국은 보상 및 배상 체계가 시설수용 생존자의 의지와 선호를 존중하고, 그러한 체계나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권위 또는 전문가 지위를 부여하거나 가할, 재활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이상의 조치들은 당사국의 국내법 및 국제인권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및 학대의 가해자를 조사하고 기소할 의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국은 시설수용 생존자들에 대한 보복을 예방해야 한다.

자. 탈시설 절차 모니터링

- 국가 차원의 예방 기구, 국가인권기구 및 기타 모니터링 기구 차원의 탈시설 모니터링 활동에서 시설 직원은 제외해야 한다.
- 공중보건 또는 공중 질서를 이유로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 또는 금지하지 말아야 하며, 독립적 모니터링을 저해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밀을 내세우지 않는 등, 독립 모니터링 기구에게 충분한 자원과 시설, 문서 및 정보에 물리적으로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제한 없는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 당사자에 관한 기록물은 시설로부터 공개되는 즉시 당사자의 의지와 기호에 따라 당사자에게 인계 및/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정보 공개에 대한 생존자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며, 당사국, 법 집행 기관, 보건 전문가 및 기타 행위자가 이러한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법적 조항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
- 모든 종류의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거주시설에 대한 독립적 모니터링이 계속되어야 하며, 긴급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진행해야 한다.



Ⅲ. 시사점

1. 탈시설 추진을 우려하는 측의 주장

가. 지역사회 인프라 먼저

주장의 요지	가이드라인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대부분(98%)이 중증이다. 현 장애인 거주시설처럼 24시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현재로써는 의문이다. • 지역사회 서비스의 확충과 재구조화가 동반되지 않는 탈시설화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지원의 확대 속도와 맞추어 나가야 한다. • 사회사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의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무리한 추진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 유럽연합의 각 국가 중 일부 국가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탈시설을 추진했고 이는 장애인의 고통으로 이어졌음을 이미 경고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권법은 즉시 발효되는 의무와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한다. •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는 완전한 실현(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완전한 참여)은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되, 목표를 향한 조치(e.g. 탈시설)는 해당 국가에서 규약의 효력이 발생하면서부터 즉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탈시설 로드맵은 오히려 늦었다고 할 수 있다. • 탈시설은 시설수용 자체로 침해받고 있는 장애인의 다양한 권리(19조, 5조, 12조, 14조, 15조, 16조, 17조, 25조)를 구제하는 당사국의 즉각적인 이행 의무다. • 포괄적 계획, 연구, 시범 사업 또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이유로 탈시설 개혁을 지연시키거나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한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 지원과 서비스의 부족, 빈곤, 낙인을 이유로 시설을 유지하거나 폐쇄 지연 정당화에 이용해서도 안 된다. •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을 즉각적인 탈시설 조치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할게 아니라,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 이행을 국가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탈시설 목적

주장의 요지	가이드라인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시설의 목적은 장애인 인권 존중과 인간다운 삶의 추구지,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 • 인권침해나 비리가 있는 시설도 있지만, 국내에도 복지 선진국 못지않게 잘 정비된 시설들이 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가. • 국내에도 복지 선진국 못지않게 잘 정비된 시설들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시설 과정이 장애인의 존엄성 회복 및 다양성 관련 인식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시설수용은 그 자체로 장애인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다. • 수용시설의 작동 메커니즘과 특징적 요소는 인권침해를 잉태하고 있다. 시설운영자나 종사자의 인성문제가 아니다. 시설화를 종식시켜야 하는 이유는 시설화 자체가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주장의 요지	가이드라인 시사점
<p>시설정책이 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종류의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거주 시설에 대한 독립적 모니터링이 계속되어야 하며, 긴급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진행해야 한다. • 현재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을 확인하고 이를 장애인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서비스로 재할당하는 것은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 탈시설 절차에서의 장애인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주장의 요지	가이드라인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가 탈시설화의 목적이라면 거주시설에서 퇴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장애인이나 가족의 선택권,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아야 한다. 이를 존중하지 않는 탈시설은 인권 모순이다. • 시설이 좋아서 시설을 선택하는 부모나 장애인 당사자는 없다. 다른 선택지 없지 않은가. 돌봄에 한계를 느낀 발달장애인 보호자들 사이에서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적인 생활 및 지역사회 완전한 참여는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전제로 한다. • 협약에서 강조하는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은 장애인이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 보장받고,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등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삶의 형태에 관한 것으로 시설거주는 선택지에 애초 존재하지 않는다. • 서비스 제공자, 자선단체, 전문가 및 종교 단체 등 시설을 유지하는 데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탈시설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탈시설 주도

주장의 요지	가이드라인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 절차에서 복지부의 민관협의체엔 탈시설과 시설 폐지를 주장하는 전장연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련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으나, 정작 장애인이나 가족의 의사를 대변할 인사와 의학전문가는 참여 시키지 않았다. • 탈시설 사업과 이해관계가 깊은 일부 세력의 보조금 늘리기 전략일 뿐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특히 시설수용 생존자 및 그 대표 단체와 탈시설 모든 단계에서 협의하여, 탈시설 과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밝힌 선언을 작성하고, 이 선언이 탈시설 전략 및 계획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 탈시설 절차는 시설을 관리하고 지속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시설 수용의 영향을 받은 이들을 비롯한 장애인이 주도해야 한다. • 장애인 가족이 탈시설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성인 장애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에는 장애인을 시설에 장기 또는 단기적으로 배치하는 어떤 형태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마. 탈시설 장애인 안전

주장의 요지	가이드라인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통계(2020 전국 장애인 학대현황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 장애인 학대는 집에서 주로 발생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2배가 넘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장애인 학대사건 중 학대 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는 2018년 대비 50.2% 증가했으며 일반 지역 사회의 지인인 경우도 63.6% 증가했다. • 장애인들이 퇴소해 거주하는 지원주택은 대부분 일반 공동주택이다. 감시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독립 공간에서 얼마든지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방임이 일어나지 말란 보장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2017년 기준 전체 등록 장애인의 1.78%가 생활하는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비중이 98%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학대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 감시체계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 공동주택에서의 인권침해나 방임이 우려가 된다면, 비장애인도 다를 바 없다. • 안전이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당사국은 장애인의 보호 조치 혹은 "선택"을 이유로 시설 수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2. 탈시설 추진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

가. 탈시설 관련 정책적 의지

주장의 요지	가이드라인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조사·신청 제도 운영 → 개인지원 대상 발굴 • 시설거주 희망 장애인에 한해서 시설 변환을 통해 자립생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에서 강조하는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은 장애인이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 보장받고,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등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삶의 형태에 관한 것으로 시설거주는 선택지에 애초 존재하지 않는다. • 당사국은 시설 유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시설에서 살기로 장애인이 "선택"했다거나 이와 유사한 주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거주시설 운영 전환 • 現 장애인 '거주시설'을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심 전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기능 변환 • 장애인거주시설은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서비스는 시설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는 기관이 관리하는 곳이어서는 안 되며, 의료 또는 특정 지원 서비스 수용을 조건으로 해서도 안 된다. • 환경 개선, 병상 추가 확보,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 시설 명칭 변경 등을 통해, 시설 수용의 특징적 요소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없거나, 바뀌거나, 제거되는 것만으로 지역사회 기반 거주 형태로 여겨서는 안 된다. • 과도기적인 시설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한 임시조치 또는 디딤돌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시설 및 시설 종사 인력은 지역사회에서 '연속적인 돌봄'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 거주 시설 장애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탈시설 과정에서 종사자의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주장의 요지	가이드라인 시사점
	<p>적극적 개입과 지원, 그리고 민간시설이 자발적으로 구조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지원함으로써 시설과 종사자들의 탈시설 저항을 완화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시설 및 종사자들의 기존 돌봄 서비스가 시설변환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로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시설에 의한 탈시설, 시설에 의한 지역사회 지원서비스를 의미한다. 시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나. 정신장애인 탈원화 전략 부재 등

주장의 요지	가이드라인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다른 유형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를 이유로 한 구금에서 장애인을 해방하고 새로운 구금을 방지하는 것은 당사국의 즉각적인 의무이며 재량적인 사법 또는 행정 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장애를 이유로 한 비자발적 구금의 금지, 수용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신규 배치, 신규 입원 및 신규 시설, 병동 설립, 기존 시설의 보수 및 개조를 금지하고, 협약 제14조에 부합하지 않는 법 조항에 의한 모든 구금을 취소해야 한다. 장애를 이유로 한 구금 및 시설수용, 장애와 관련된 고문과 학대는 범죄다. • 전반적 법률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시설을 지연하지 말아야 하며, 후견인, 강제적인 정신건강치료 또는 기타 대체 의사 결정 등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관한 법률 개혁은 탈시설과 동시에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 • 탈시설 노력에는 치매 환자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노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치매인 마을"을 비롯한 노인 대상 시설은 모두 탈시설 대상이 되어야 한다. 노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 내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 아무도 말하지 않는 탈시설 이슈

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배/보상 등 구제

탈시설 쟁점	가이드라인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생활로 인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구제방안 논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시설 수용을 경험한 장애인을 대표하는 모든 단체와 협상하고, 시설수용 생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시설수용의 결과로 빚어진 고통과 어려움 및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은 시설 수용 생존자들에게 자동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형태의 사법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 시설 수용에 관련한 당국과 전문가들은 배, 보상 체계 구축 및 실행에서 역할을 담당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 당사국은 보상 및 배상 체계가 시설수용 생존자의 의지와 선호를 존중하고, 그러한 체계나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권위 또는 전문가 지위를 부여하거나 가할, 재할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이상의 조치들은 당사국의 국내법 및 국제인권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및 학대의 가해자를 조사하고 기소할 의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나. 기타

탈시설 쟁점	가이드라인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그룹홈, 주간보호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그룹홈'을 포함한 단체 주거, 보호작업장, '임시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전환홈(체험홈), 주간보호 센터(Day-care centres)는 수용시설의 특징적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탈시설 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영화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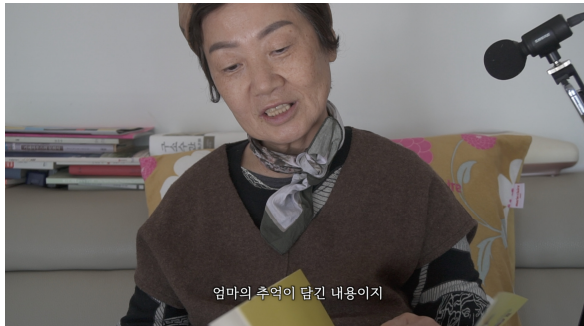
▶ **양림동 소녀**
임영희, 오재형 감독

모든 삶이 들어있는 한 사람

임영희, 오재형 감독의 <양림동 소녀>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큰 인기입니다.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었기에 윤색은 있었겠지만 30여 년 전, 한 시대를 풍미한 『빨치산의 딸』(1990) 이래로 정지아 작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아버지 이야기를 다뤘고 이번에도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지아 작가 뿐일까요? 모든 창작자는 부모의 생애를 기록하고 싶은 욕망을 숙제처럼 갖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폐막작 <양림동 소녀>도 그 계보에 있습니다. <양림동 소녀>는 카메라를 든 아들 오재형과 그림, 시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는 어머니 임영희의 공동작업입니다. 영화는 두 사람의 짧은 대화로 시작해서 어머니가 직접 그린 그림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야기는 고향 진도에서 출발해 광주에서 보낸 학창 시절, 성인으로 경험한 시대의 아픔을 지나, 뇌졸중 때문에 오른쪽 손이 자유롭지 못한 노년까지 이어집니다. 어머니는 다정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시간을 말하고 아들은 웃음으로 화답하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국제노인영화제, 광주여성영화제 등 여러 영화제를 차근차근 돌고 있는 이 영화를 오재형 감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날 엄마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삐뚤삐뚤한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이때다 싶어서 간단한 인터뷰를 한 후에
영상으로 옮겨 보았다. 귀여운 그림체로
전달하는 엄마의 생애 구술사 애니메이션”

제가 오재형 감독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덩어리〉라는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덩어리〉는 참 독특한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초반, 극 중 화자이자 연출자인 감독은 주변 사람들에게 미확인물체, 즉 UFO의 존재를 믿느냐며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제 기간이라서 폭신한 의자에 앉아 경쾌하고 발랄한 B급 영화라고 생각하며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몸을 바로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재형 감독은 UFO가 진짜라고 주장했다가 거짓으로 판명된 에피소드를 소개하다가 갑자기 말합니다. “나도 내 몸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으로 힘든 적이 있었다” 농담처럼 시작했던 영화는 감독의 마음 속 고통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는데 자신의 불안 장애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감독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저 또한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게 되었지만 〈덩어리〉를 극장에서 보던 2016년은 지금과는 좀 달랐거든요.

2019년에 발표된 〈모스크바 닭도리탕〉은 또 다른 의미에서 새로웠습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모스크바와 닭도리탕이 서로 이질적인 것처럼 영화 또한 서로 이질적인 이미지와 사운드, 텍스트를 조합해 낯선 세계와의 만남을 낯설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재형 감독은 초여름에 부모님과 떠났던 북유럽 패키지여행의 조각들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모스크바의 닭도리탕, 코펜하겐 해변의 등산복 입은 한국인들, 금발의 외국인이 부르는 트로트까지 공간은 낯선데 친숙한 것들이 들어차 있어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가 생각하게 하는 풍경들이 꿈처럼 펼쳐집니다. 〈모스크바 닭도리탕〉과 〈덩어리〉의 감독이 동일인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좀 놀랐습니다만 자신이 느꼈을 그 흐릿함과 생경함을 관객도 느끼기를 바라는 감독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피아노 프리즘〉(2021)이라는 영화로 또 새로운 면모를 보입니다.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모든 한국어 사용자를 위해 화면해설과 음향자막이 추가된 배리어 프리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통 배리어 프리 버전은 영화를 모두 완성한 후에 추가로 제작됩니다. 감독이 완성한 영화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별도로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경우 배리어 프리 버전은 다른 업체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오재형 감독의 배리어 프리 방식은 확연히 다릅니다. 감독은 자신이 등장하는 영화의 첫 장면을 “잡다한 물건들이 많은 방, 잠옷 차림의 저는 가운데에서 서서 허리 스트레칭을 합니다.”라며 자신을 ‘저’로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제작 과정 안에 이미 배리어 프리 방식을 녹여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매번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온 오재형 감독의 영화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의 폐막작으로 선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번에는 또 어떤 새로움을 만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재형 감독은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잘 살피고 신중하게 새로운 경험을 해가며 꾸준히 자기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광주여성영화제가 <양림동 소녀>를 선택한 이유 또한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뇌졸중으로 오른쪽 손을 쓰지 못하는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비뚤빼뚤한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상상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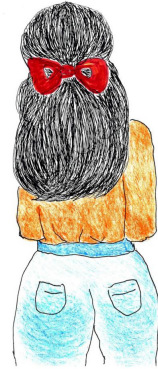
다정하고 부드럽게 펼쳐지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순간들을 선사합니다. 문학소녀였기에 셰익스피어, 도스토예프스키, 윌리엄 워즈워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언니라 부르는 사람을 만나고 시몬드 보부아르, 베티 프리단, 로자 룩셈부르크와 함께 하는 양림카페의 이야기까지 듣고 나면 어머니 임영희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순간도 만나게 됩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온 몸으로 겪었고 항쟁이 끝난 후에도 기록하고 활동했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나는 이 장소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있었을까. 정말 신성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광주 오월 공동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큰 영광스러운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했다는 그런 기분이었지”



그리고 장애를 갖게 된 노년의 시간에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고립되는 현실에 대한 씁쓸함을 토로합니다.

어머니 임영희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림체, 아들 오재형 감독이 직접 연주한 포근한 피아노 선율, 그리고 모자의 다정한 대화. 그런데 어머니가 들려주는 시대의 아픔과 사회적 차별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듣다 보면 한 사람의 생애가 이토록 풍성할 수 있다는 사실에 존경의 마음이 절로 듭니다. 마른 땅만 딛고 가는 삶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때론 빗물이 옷을 적시고 흙탕물에 발이 젖더라도 계속 가다 보면 모든 시간이 좋았다고 웃으며 돌아볼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요? 어머니 임영희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의 낙관적인 태도가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에게 스며들 것입니다.



뇌졸중 환자 열 명 정도와 커피숍에 갔다가 모두가 자리를 피해버리는 상황을 들려주며 “장애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될 사람들이라고 슬슬 도망가더라니까?”라며 한탄하던 어머니는 곧이어 재봉틀을 사고 양재학원을 다니며 옷을 짓는 남편 이야기를 하며 “아름다운 노년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다”며 하하 웃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썼다는 시를 들려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노키즈존에 이어 노시니어존, 그리고 노중년존까지 등장하며 차별은 일상으로 스며들고 차이에 따른 갈등은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양림동 소녀>를 보며 지금 이 곳에 만연한 선긋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노인 영화, 여성영화, 장애인 영화, 사회적 영화. 이 모든 분류에 다 맞아떨어지면서도 딱히 그 이름들로는 분류하고 싶지 않은 영화를 만났습니다. 삶에 열심인 사람이 주인공이었고 그래서 그 삶 안에 모든 가치가 녹아 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문학을 사랑하고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동참했고 노년에는 장애를 가지게 된 임영희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지금의 선긋기들이 참 부질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선긋기가 만연한 지금의 한국사회에 선물처럼 찾아온 영화입니다. 꼭 만나보세요.(문의: 오재형감독 thelump.net)

